

발간번호  
2022-어린이집지원-004

202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202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2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2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 PART 1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역할

### I 아동학대의 발견

- 1.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06
- 2. 아동학대 발생 현황 08
- 3. 아동학대 개념과 유형 10

### II 아동학대의 신고

- 1. 아동학대 신고방법 15
- 2. 아동학대 신고 이후 절차 18
- 3.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 보호와 지도 19

# PART 2

##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 I 영유아 권리존중의 Base-line

- 1.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현황 24
-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본전제 25
- 3.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한 가정과의 협력 28

### II 보육교직원의 역할

- 1. 어린이집 교사의 역할 30
- 2. 어린이집 원장의 역할 39
- 3. 민원 및 신고 시 대응 43



# PART 3

##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성 행동문제 예방

### I 영유아 발달과 성 행동

- 1. 영유아 성 행동과 성인의 태도 48
- 2. 영유아 성 행동 관련 용어의 정립 50
- 3. 영유아 성 행동 수준별 특성 이해 51

### II 영유아의 성 행동 수준별 지도

- 1. 일상적인 수준의 성행동 지도 53
- 2. 우려할 수준의 성 행동문제 지도 및 대응 55
- 3. 위험한 수준의 성 행동문제 지도 및 대응 56

# PART 4

## 아동 성폭력·실종 예방

### I 아동 성폭력 예방

- 1. 아동 성폭력의 정의 60
- 2. 아동 성폭력 현황 62
- 3.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64
- 4. 아동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66

### II 아동 실종 예방

- 1. 실종에 대한 이해 68
- 2. 아동 실종·유괴 예방교육 70
- 3. 실종·유괴 예방수칙 72
- 4. 실종아동 발생 시 대처방법 및 실종 예방 관련 정보 74

PART

# 1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역할



아동학대는 영유아의 생존발달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영유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역할**,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에 대해 알아본다.

### I 아동학대의 발견

1.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생 현황
3. 아동학대 개념과 유형

### II 아동학대의 신고

1. 아동학대 신고방법
2. 아동학대 신고 이후 절차
3.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 보호와 지도

## I

## 아동학대의 발견



## 1.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며, 영유아에 대한 학대가 의심될 경우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제63조
<b>제10조(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b>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p> <p>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p>
<b>제63조(과태료)</b>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p>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 직장교육을 미 실시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제75조 (시행령 제26조)
<b>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b>	<p>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b>제75조(과태료)</b>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p>

##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요약 제시

-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교육내용: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및 인터넷 강의 등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의해 보호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또는 신고의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신고의무자 보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범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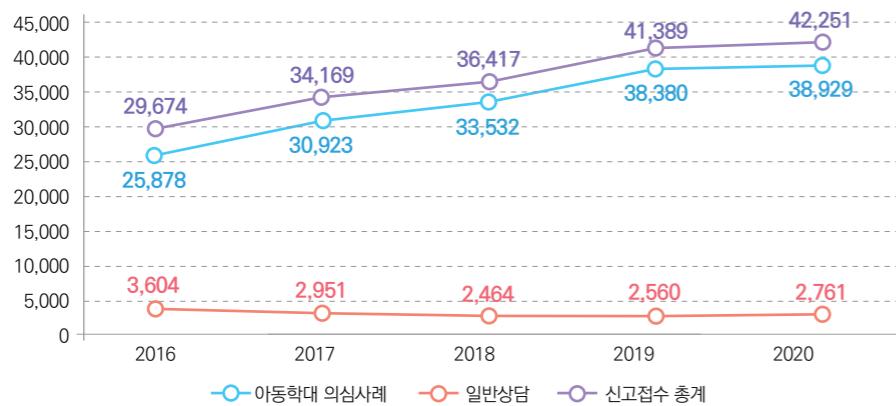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8.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2. 아동학대 발생 현황

- 보건복지부의 「2020 아동학대 주요 통계」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신고 및 상담접수 건수는 총 42,251건으로 전년 대비 약 2.1% 증가하였으며, 이 중 아동학대의심사례는 총 38,929 건이었다.



- 아동학대의심사례 총 38,929건 중 아동학대로 사례판단이 이루어진 사례는 30,905건(79.4%)이었다. 아동학대사례 30,905건 중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한 경우는 11,209건(36.2%)이었다. 11,209 건 중 고소·고발이 진행된 경우는 10,455건(93.3%)이었고, 고소·고발은 진행되지 않았으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처분이 행해진 경우는 754건(6.7%)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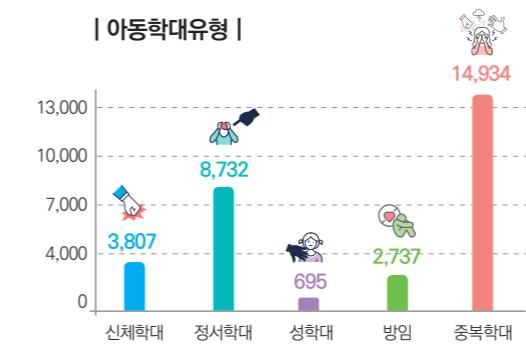


학대행위자 법적조치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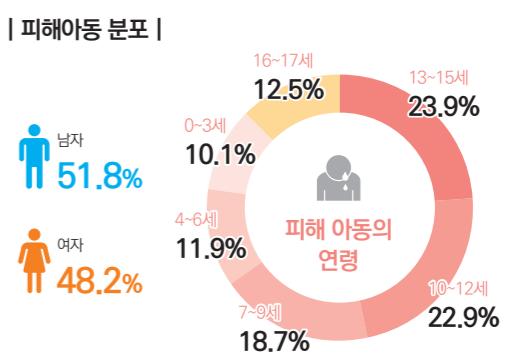


- 아동학대사례 30,905건 중 학대유형을 보면, 중복학대가 14,934건(48.3%), 정서학대가 8,732건(28.3%), 신체학대가 3,807건(12.3%), 방임이 2,737건(8.9%), 성학대가 695건(2.2%)이다. 피해 아동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0~3세 영아 및 걸음마기 유아가 10.1%, 4~6세 취학전 유아가 11.9%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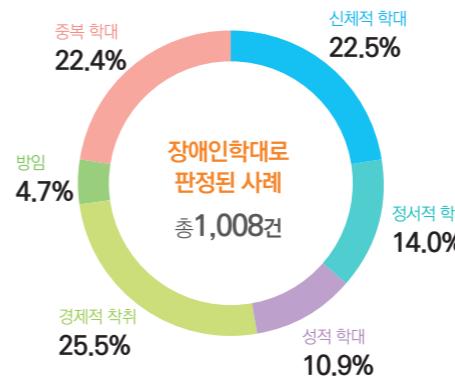
| 아동학대유형 |



| 피해아동 분포 |



-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 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총 4,208건이며 그중 학대의심사례는 2,069건(49.2%), 일반사례는 2,139건(50.8%)이다.
- 학대의심사례 2,069건 중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008건(48.7%)임. 학대의 유형을 보면, 경제적 착취 257건(25.5%), 신체적 학대 227건(22.5%), 중복학대 226건(22.4%), 정서적 학대 141건(14.0%), 성적학대 110건(10.9%)으로 나타남. 피해장애인의 연령 분포에서 17세 이하의 아동인 경우는 133건(13.2%)이었다.



- 2020년 현재, 전국 총 71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피해 아동 지원업무를 하고 있으며, 전국 총 76 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으로 피해아동에게 숙식뿐 아니라 생활지원과 상담 및 치료, 교육 등을 제공)가 설치되어 있다.

### 3. 아동학대 개념과 유형

-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음.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범죄	<p>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에 열거된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법상 범죄: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 - 카목</li> <li>• 아동복지법상 범죄: 아동학대처벌법 제2호 제4호 타목</li> <li>•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죄: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파목</li> <li>•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하목</li> </ul>
아동학대관련범죄	<p>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범죄</li> <li>•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li> </ul>

- 보호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2호에서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함.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는 시간 동안 당해 영유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직원은 보호자에 해당된다.
-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거나(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돌보지 않아(유기하거나 방임하는)’ 아동의 복지를 훼손하는 경우 모두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
-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구체적인 행위	신체적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li> <li>•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를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li> <li>•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li> <li>•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굵힌 상처</li> <li>•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li> <li>•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회음부에 있는 화상자국, 알고 있는 물체모양(다리미 등)의 화상자국, 회복속도가 다양한 화상자국</li> <li>•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li> <li>• 굵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li> </ul>

구체적인 행위	신체적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목이나 발목에 굵힌 상처, 영유아에게 발견된 붉게 굵힌 상처</li> <li>• 성인에 의해 물린 상처</li> <li>•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li> <li>• 대뇌 출혈, 망막출혈, 양쪽 안구 손상,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두피 혈종 등을 동반한 복잡한 두부 손상</li> <li>• 고막 천공이나 귓불이 끊겨진 상처와 같은 귀 손상</li> <li>• 골격계 손상, 시간차가 있는 골절, 치유 단계가 다른 여러 부위의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 척추 손상(특히, 여러 군데의 골절), 영·유아의 긴 뼈에서 나타나는 간단 골절, 회전상 골절, 걷지 못하는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대퇴골절, 골막하 출혈의 방사선 사진, 골단 분리, 골막 변형, 골막 석회화</li> <li>• 간헐증, 간열상, 심이지장 천공, 궤양 등과 같은 복부손상</li> <li>• 폐 좌상, 기흉, 흉막삼출과 같은 흉부손상</li> </ul>
<b>행동적 징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른과의 접촉회피</li> <li>•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li> <li>•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li> <li>• 부모에 대한 두려움</li> <li>•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li> <li>•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li> </ul>

- 정서학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구체적인 행위	신체적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 폭력행위(소리 지름, 무시 또는 모욕, 원망적·거부적·적대적·경멸적 언어폭력, 아동에게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등)</li> <li>• 정서적 위협(공포분위기 조성, 좁은 공간에 혼자 가둬둠, 집 밖으로 쫓아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지속적으로 아동들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가정폭력에 노출시킴, 잠을 재우지 않거나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li> <li>•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강요하는 행위(돈을 벌어오라며 위협, 아동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과업이나 행동 요구 등)</li> <li>•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li> <li>• 신체발달저하</li> </ul>
<b>행동적 징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물건을 계속 빌고 있거나 물어뜯음</li> <li>•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li> <li>• 신경성 기질 장애(놀이장애)</li> <li>•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li> <li>• 언어장애</li> <li>•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li> <li>•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li> <li>•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li> </ul>

- 성학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성적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구체적인 행위	신체적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등)</li> <li>•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 성기추행, 항문추행,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li> <li>•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구강성교, 항문성교)</li> <li>•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li> <li>•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신체적 지표: 학령 전 아동의 성병 감염, 임신</li> <li>② 생식기의 증거: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질의 흉진(紅疹), 배뇨 곤란, 요도염, 생식기의 대상포진, 화음부의 동통과 가려움</li> <li>③ 항문 증후: 항문 팔약근의 손상,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항문 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 항문이 좁아짐, 변비, 대변에 혈액이 나옴</li> <li>④ 구강 증후: 입천장의 손상, 인두(咽頭)임질(pharyngeal gonorrhea)</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행동적 징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성적(性的) 행동지표: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li> <li>② 비(非)성적인 행동지표: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 행동),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집중장애,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또는 외톨이,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방화/동물에게 잔혹함(주로 남아의 특징), 비행, 가출, 약물 및 알콜 남용, 자기 파괴적 행동(자살시도), 범죄행위, 우울, 불안, 사회관계의 단절, 수면장애, 유뇨증/유분증, 섭식장애(폭식증/거식증), 야뇨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저조한 학업수행</li> </ul>

- 방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구체적인 행위	신체적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리적 방임(기본적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음, 위험과 상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음, 불결한 환경 및 위험상황에 아동 방치,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짐 등)</li> <li>• 교육적 방임(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교육을 제공하지 않음, 무단결석을 허용하거나 지도하지 않는 등 아동의 교육적 욕구 및 의무에 대한 방치행위 등)</li> <li>• 의료적 방임(필요한 의료적 처치 거부 등)</li> <li>• 유기(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림, 사설근처에 버리고 감,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친족 거주지 근처에 아동을 두고 사라지는 등의 행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li> <li>• 비위생적인 신체상태</li> <li>•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li> <li>•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행동적 징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li> <li>•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li> <li>• 비행 또는 도벽</li> <li>•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li> <li>•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정감 호소</li> <li>• 수업 중 조는 태도</li> <li>• 잦은 결석</li> </ul>

- 장애인학대에 대한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학대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학대관련범죄	<p>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호 - 14호. 형법관련</li> <li>• 15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관련</li> <li>• 16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관련</li> <li>• 1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관련</li> <li>• 18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관련</li> <li>• 19호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li> </ul>

- 장애인학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구분	개념
신체적 학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정서적 학대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성적 학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노동력의 착취, 공적 급여를 포함한 재산의 갈취 및 편취, 재산 관리나 금전 거래에서 장애를 이용하여 손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방임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 아동학대 상황이 의심스러울 때,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십시오. 1개 문항 이상 “예”라고 체크 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구분	내용	체크란
1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명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기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구분	내용	체크란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9	성학대로 의심될만한 질환, 신체적 흔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0	성인의 성적 행동을 모방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2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출처: 보건복지부(2021).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 II

## 아동학대의 신고



## 1. 아동학대 신고방법

-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112에 신고한다. 아동학대를 신고하기 전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전화하여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상담할 수도 있다. 아동학대 상담 중 학대 의심 사실이 확인되어 출동이 필요한 경우, 즉시 112에 통보되며 현장출동이 실시된다.

 <b>어디로 신고하나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번 없이 112에 신고(전화, 문자)</li> <li>• 시군구 긴급전화</li> <li>• 아이지킴클랩 활용</li> <li>• 장애인학대는 1644-8295(장애인학대 신고번호)</li> </ul>
 <b>어떤 내용을 신고하나요?</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해(의심)아동의 현재 상황: 피해(의심)아동의 안전여부, 응급조치 필요여부, 피해(의심) 아동의 심신상태 등</li> <li>2. 피해(의심)아동 인적사항: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li> <li>3. 아동학대행위(의심)자 관련사항: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피해(의심) 아동과의 관계, 피해(의심)아동과의 동거여부, 아동학대행위(의심)자의 특성 및 성향</li> <li>4. 신고자 관련사항: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 주소, 피해(의심)아동과의 관계, 신고의무자 여부, 신고목적(신고자의 욕구)</li> <li>5. 아동학대 의심상황: 아동학대 유형(구체적인 아동학대행위), 아동학대의 정도 및 심각성, 아동학대 발생빈도, 아동학대의 지속성,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상황</li> <li>6. 기타사항: 추가 아동 존재여부(집단 내 다른 아동 또는 아동의 형제·자매 존재여부), 아동학대 행위 (의심)자의 현재 상황(심신 상태 등), 다른 기관과의 연계 여부, 기타 내용</li> </ol> <p>※ 위의 정보를 모두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p>
 <b>신고 예시</b>	<p><b>112 전화신고 예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O 어린이집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입니다</li> <li>- OO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 ( )의 이유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연락드립니다.</li> <li>※ 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가능</li> <li>- 아동의 현재 상황은 ( )입니다.</li> <li>※ 아동의 안전여부, 응급조치 필요여부, 아동의 심신상태, 가정상황 등</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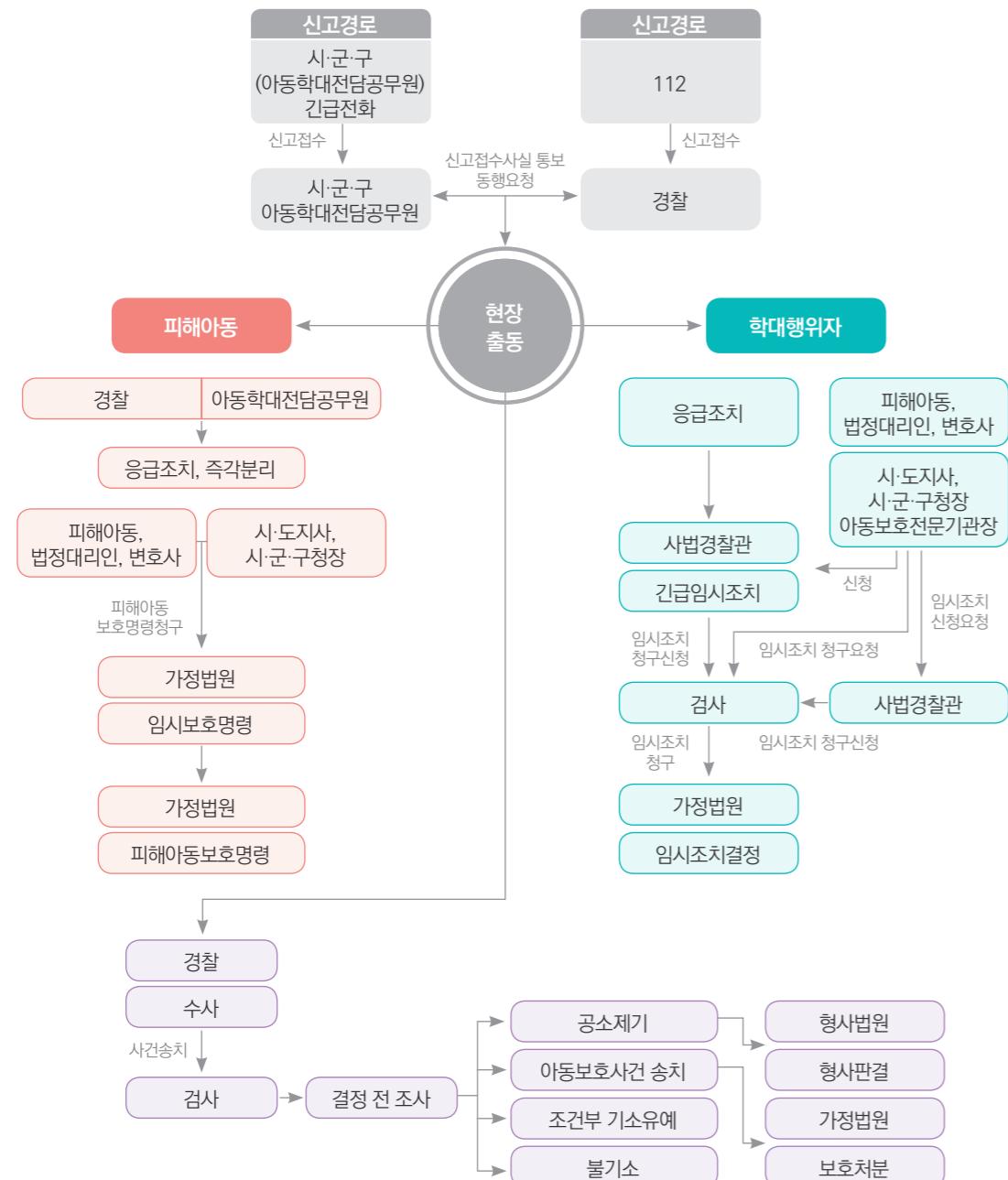
 <p><b>신고 예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인적사항은 ( )입니다. ※ 이름, 성별, 연령,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li> <li>- 학대행위자로 의심이 되는 사람은 ( )입니다. ※ 이름, 성별, 연령, 주소 등. 학대행위자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 가능</li> <li>- 신고자는 ( )입니다.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아동과의 관계 등 ※ 익명으로 신고 가능</li> </ul> <p><b>112 문자신고 예시</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대피해 의심 아동 정보(추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름 :</li> <li>2) 성별 :</li> <li>3) 연령 :</li> <li>4) 주소(학대발견지 혹은 실거주지) :</li> </ol> </li> <li>2. 학대피해 의심 아동 정보(추정)</li> <li>3. 학대 의심내용</li> <li>4. 기타사항</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 신고 전후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li> </ul>
 <p><b>신고자는 보호받을 수 있나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자의 신분은 다음과 같이 보호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사항 기재 생략</li> <li>- 인적사항의 공개 금지(누구든 신고자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해서는 안 됨)</li> <li>- 신원관리카드의 열람 가능</li> <li>- 증인신문시 영상을 촬영 제출 가능</li> <li>- 신변 안전 요청 가능</li> <li>-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를 확인한다.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상처나 징후가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질문하여 설명을 들어본다.</li> <li>✓ 아동학대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거 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한다.</li> <li>•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는다.</li> </ul> </li> <li>✓ 피해아동의 안전 및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하며, 응급상황 시 병원으로 즉시 이송 후 신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대한다.</li> <li>• 피해아동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li> <li>• 피해아동에게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거나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으로 즉시 이송 후 신고한다.</li> </ul> </li> <li>✓ 신고자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본인도 주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 2항)</li> <li>• 따라서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 방문 시 주변에서 “신고자가 누구인지?” 물어도 답변하지 않고, “아동학대가 신고되어 방문했다”고 말한다.</li> <li>•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언론인터뷰 요청이 있더라도 독단적으로 응해서는 안 되며, 언론보도로 신고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 대응 청구를 원장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한다.</li> </ul> </li> <li>✓ 영유아의 진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수사에 협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의 진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육교직원이 직접 상담하지 않고, 전문가가 상담하도록 한다.</li> <li>• 신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기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한다.</li> </ul> </li> </ul>

출처: 보건복지부·경찰청(2021).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 2. 아동학대 신고 이후 절차

- 아동학대 신고 발생 후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참고) 용어에 대한 설명은 인용도서의 87 ~ 91쪽에 제시된 부록 2. 용어설명을 참조할 것.

출처: 보건복지부(2021).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 3.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 보호와 지도

- 어린이집에서는 매일 영유아의 출결 확인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 한다.

어린이집에 결석한 아이, 반드시 사유를 확인합니다!	
<b>매일 확인해야 하는 내용</b>	<b>2일 이상 무단결석한 경우</b>
아동이 어린이집을 결석하는 경우, 부모가 보육교사에게 유선이나 스마트 알림장 등 대화 방법을 통해 어린이집에 알려야 한다. 교사는 아동 결석 당일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결석 사유를 확인한다. ※ 가정 방문해야 하는 경우, 각 지역 주민센터(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연락한다.	2일 이상 무단결석한 경우 가정방문을 할 수 있으며, 아동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112)에 신고해야 한다. 가정방문 시 보육교직원, 읍면동 공무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방문한다.

명확한 사유 없이 퇴소 신청을 할 때에도 아동학대를 의심해볼 수 있다.

-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가 나타내는 징후는 학대나 방임의 특성, 발생 시기, 지속기간, 강도, 영유아 개인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편이다. 어떤 영유아는 분명하고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다른 영유아는 미세한 행동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다음과 같은 특성들은 학대나 방임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학대와 무관한 다른 원인으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징후들은 아동과 가족이 지원이나 중재의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다.

- **발달지연:** 영유아기에 일관되고 풍부한 경험이 부족하면 동작, 언어, 사회, 인지 발달의 지연이 나타날 수 있다.
- **섭식행동문제:** 심각한 방임을 경험한 영유아는 음식을 감추거나 모으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
- **진정행동:** 어떤 영유아는 머리를 벽에 부딪치거나, 앞뒤로 흔들거나, 깎거나, 상처를 내는 등의 평범하지 않은 진정행동을 보인다.
- **정서 문제:**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가 나타내는 정서문제의 범위는 매우 넓고, 대개는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다. 이 외 어떤 영유아는 성인에게 매우 빨리 애착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는 안전에 대한 영유아의 기본 욕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부적절한 모델링 행동:** 학대하는 성인을 모방한 행동, 성인의 성적인 행동에 대한 모방 행동을 나타낸다. 영유아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이것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 **공격성:**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는 또래에게 공격적이거나 잔인한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학대나 방임의 결과 이들 영유아는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충동 조절이 어려우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 보육교직원은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가 나타낼 수 있는 행동 징후를 이해하고, 학대신고 전후의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 학대 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가족을 지원하는 다른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부모가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다.
- 어린이집은 가정에서 학대위험에 노출되는 영유아에게 일종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안전하고 편안하며 즐거운 일과 경험을 통해 영유아가 세상에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뢰를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영유아는 회복탄력성이 있으며, 특히 일부 영유아는 학대와 방임의 정도와 무관하게 학대경험과 관련된 상처와 두려움을 극복해낼 역량을 갖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같이 지원적인 성인의 도움으로 학대에 노출되었거나 노출 위험이 있거나, 학대가 있지는 않아도 가정폭력 등과 같은 다른 문제를 겪고 있는 가정의 영유아가 스스로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영유아를 잘 돌봐주기**: 영유아를 위협적이지 않은 방식, 성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안아주고, 달래줄 필요가 있다. 학대경험이 있는 영유아 대부분에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만지는 것은 아픔, 고통, 다른 형태의 학대와 관련이 있었다. 영유아는 신체적 접촉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만지는 것이 늘 불쾌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 **정서 연령에 따라 영유아를 돌봐주기**: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영유아는 정서적, 사회적으로 지연되어 있기 쉽다. 이들 영유아는 공포를 느끼거나 좌절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령에 맞게 행동하지 못한다. 보육교직원은 이들 영유아를 그들의 생물학적인 연령이 아니라 정서적 연령과 요구에 맞게 이해하고 돌봐줄 필요가 있다.
- **영유아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대화하기**: 보육교직원은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영유아에게 부드럽고 일관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영유아는 교사를 신뢰하고 자기의 감정을 공유하기 시작한다.
- **영유아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신체적인 학대를 경험한 영유아가 또래를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깨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방임에 노출된 영유아가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따로 숨겨놓을 경우 이 행동이 음식이 박탈된 데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이런 행동을 못하게 막을 경우 이는 영유아의 안전감을 위협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지도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보육교사 자신을 돌보기**: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를 돌보는 것은 가외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보육교직원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지 않다면 이를 영유아의 요구에 일관적이고, 예측성 있으며, 풍부하고, 지원적인 돌봄을 해주기 어렵다. 보육교직원도 쉬고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PART



##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영유아가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일관되게 긍정적 지도를 받으며  
행복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본전제와 보육교직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 I 영유아 권리존중의 Base-line

1.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현황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본전제
3.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한 가정과의 협력

### II 보육교직원의 역할

1. 어린이집 교사의 역할
2. 어린이집 원장의 역할
3. 민원 및 신고 시 대응

##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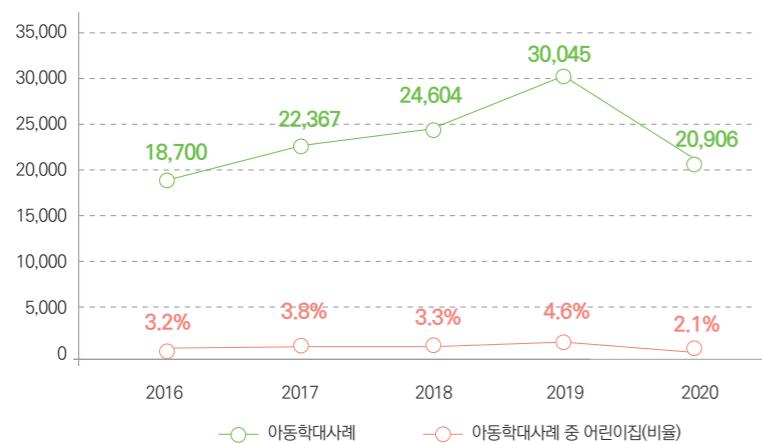
# 영유아 권리존중의 Base-line



## 1.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현황

- 보건복지부의 「2020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아동학대 사례 총 30,905건 중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례는 총 658건(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5년간 추이에서 감소한 경향이다.

발생년도	아동학대사례 건수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사례 건수	비율
2016	18,700	601	(3.2%)
2017	22,367	843	(3.8%)
2018	24,604	811	(3.3%)
2019	30,045	1,371	(4.6%)
2020	20,906	658	(2.1%)



- 어린이집에서의 장애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 사례는 별도 통계를 찾기 어려우나, 뉴스검색에서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 2021년 2월 15일 제주시의 한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두 살배기 아동이 양 귀에 피멍이 든 채로 귀가했다. 다음날인 16일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노컷뉴스 2022.02.24)
- ○○○○어린이집이 보육교사 아동학대로 인해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시 관계자는 “장애어린이집이라는 부분을 감안해 이같은 행정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여수넷뉴스 2022.02.23)
- 인천 서구 소재 국공립 장애통합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장애아동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인천투데이 2022.02.18)

-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기관이다.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는 이미 보육행위에서의 실패라 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아동권리 존중의 기초선(Base-line)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본전제

-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판례를 분석해보면, 무시, 비난, 조롱, 거짓 협박, 차별, 거친 접촉 등 권리존중 상호작용의 기초 선을 훼드는 부적 요소들이 반복되면서 아동학대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부적 요소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례문 中 일부
무시나 방치가 학대 행위로 이어진 경우	안아달라고 하는 피해 아동의 ...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2018.7.12. 선고 2017고단 6311판결)
비난이 학대 행위로 이어진 경우	“너 나이가 몇인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쉬를 싸냐”며 폭언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6 고단1861)
조롱이 학대 행위로 이어진 경우	훈육하겠다며 아동의 팔을 잡아 끌어 세운 후 갑자기... 다른 원생 앞에서 아동의 알몸을 노출시켰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8.18. 선고 2018고단 736 판결)
거짓 협박이 학대 행위로 이어진 경우	과제를 마무리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만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원 2018고단 1103)
차별이 학대 행위로 이어진 경우	교실 구석에 있는 언어영역 책상에서 혼자 먹도록 배제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18노484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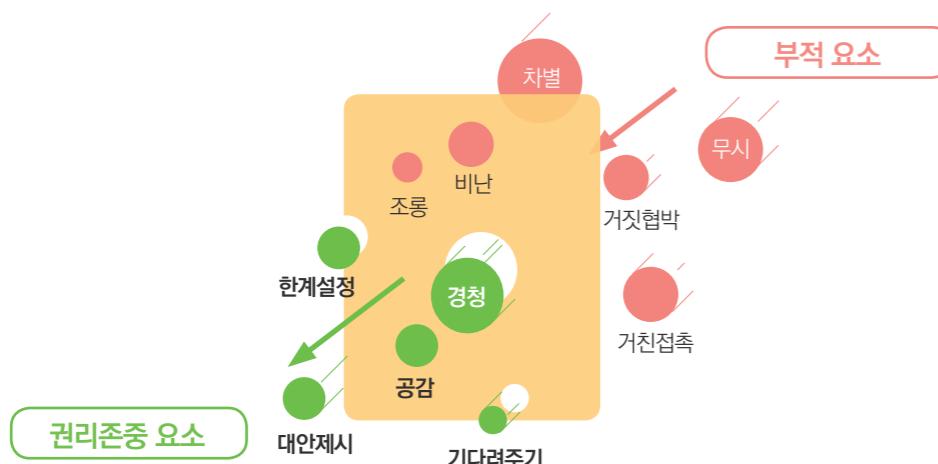
부적 요소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례문 中 일부
거친 접촉이 학대 행위로 이어진 경우	피해아동에게 “미워”라고 소리치며 양 볼을 꼬집어 빨갛게 달아오르게 한 후 피해 아동을 바닥에 눕히고 이불을 피해 아동의 머리끝까지 덮어놓아 피해 아동이 두려움에 떨며 울게 하였다. (제주지방법원, 2016.5.12. 선고 2015고단1107판결)

출처: 보건복지부(2021).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 **니어미스(Near Miss)**란 하마터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을 의미한다.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종사자가 니어미스를 경험했을 경우 이를 보고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종사자의 행동이나 업무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어린이집에서 불의의 아동학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는 영유아의 안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문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보육활동의 기반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은 니어미스의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중재, 관리될 필요가 있다.



-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의 요소 대신 부적 요소가 나타난 상태를 부주의한 지도로 볼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이것이 심지어 아동학대 행위로 판단될 수도 있다.



- 어린이집에서는 부주의한 지도의 요소가 나타날 때 이를 아동학대 사고의 니어미스라 인식하고, 즉시 보육교직원의 행동이나 업무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권리존중 보육이 일상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보육교직원이 자신의 부주의한 지도 행위가 영유아에게 어떻게 인식될 것인지에 대해 감수성이 부족하거나 자기경계가 흐려져 이를 개선하지 못한 채 은밀성, 반복성, 고의성을 띠면 아동학대 행위로 심화될 위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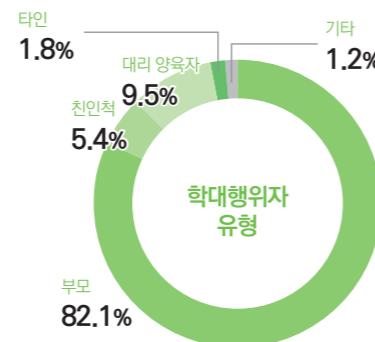


- 어린이집에서는 평소 보육일과를 모니터링 하여 보육교직원의 부주의한 지도가 행위자 스스로 혹은 주변의 관찰에 의해 탐지되고 중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부주의한 지도가 이루어지는 원인을 분석하여 교사 연수, 보호자와의 협력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부주의한 지도가 아동학대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적극 예방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의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아동학대 행위 발생 시 그것이 훈육을 위한 행동이었다거나 혹은 부주의한 지도였다고 호도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영유아에 대한 부주의한 지도 행위를 중재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리는 보육교직원으로 하여금 행동의 부적 요소를 들어내고 대신 그곳에 권리존중의 바람직한 행동 요소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의 요소	보육교직원의 행동에 권리존중 요소가 빠질 때 대신 나타나기 쉬운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다려주기</li> <li>✓ 영유아의 언어적, 비언어적 요구를 경청하기</li> <li>✓ 영유아가 나타내는 정서에 공감해주기</li> <li>✓ 할 수 없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한계 설정해주기</li> <li>✓ 영유아가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시 (영아가 계속 칭얼거리며 옷을 잡아당기는데 못 본 척함)</li> <li>✓ 비난 (실수로 식판을 쟁았는데, “아휴!”하며 혀를 차서 유아가 눈치를 봄)</li> <li>✓ 조롱 (“잘~한다. 너 자구 그러다가 넘어 질 줄 알았다.”)</li> <li>✓ 거짓협박 (“교실로 들어가자! 골찌지? 너는 혼자 놀아! 우리는 간다!”)</li> <li>✓ 차별 (“너는 오늘 계속 딴 짓을 했으니, 선생님이 000이만해 줄 거예요.”)</li> <li>✓ 거친 접촉 (팔을 부주의하게 잡아당김)</li> </ul>

### 3.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한 가정과의 협력

- 보건복지부의 「2020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아동학대 사례 총 30,905건 중 아동의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총 26,249건(84.9%)였으며,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총 25,380건(82.1%) 이었다.



- 가정에서 부모 혹은 보호자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기초선(Base-line)**을 지키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

#### 가정에서의 부주의한 지도 사례

##### 무시

“쪼그만게 뭘 안다 그래. 어른들 말하는 데  
끼어들지마.”

“(아이가 요구하는 일을 거절하며) 그건 네가  
결정할 일 아니야. 엄마, 아빠가 허락해줄 때 해.”

##### 거짓협박

“너 자꾸 이렇게 말 안 듣고, 울음 안 멈추면 벽보고  
서있게 할거야!”

“(밥 안먹는 아이에게) 밥하고 반찬 골고루 다  
먹어야 TV보여 줄거야!”

##### 비난, 조롱

“너 왜 자꾸 밤에 오줌 싸는거야. 000이가 자꾸  
오줌싸니까 엄마 힘들잖아.”

“엄마, 아빠 빨리 회사가야 해. 너 때문에 회사도,  
어린이집도 늦었잖아. 정말 신으라니까, 왜 안 신고  
돌아다니는거야!”

“신발 제대로 신으랬지! 너 거꾸로 신고 다니다  
남어질 줄 알았어.”

##### 차별

“동생도 혼자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하는데, 000이는  
왜 혼자 정리 못하는 거야.”

“너가 형이니까, 동생한테 장난감 양보하는 거야.”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공식블로그

- 더 나아가 부모와 보호자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방법을 배워 실행하여야 한다.



출처: 한국아동권리보장원 인스타그램

- 영유아는 가정에서 권리존중 양육을 받고, 어린이집에서는 권리존중 보육을 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지도방법이 다르면 영유아는 성인의 지도에 어떻게 따라야 할지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 영유아는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일관되게 긍정적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II

## 보육교직원의 역할



## 1. 어린이집 교사의 역할

- 하루일과를 통해 영유아 권리 존중의 **기초선(Base-line)**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주의한 지도의 요소를 인식하고, 이를 권리존중의 요소로 바꾸어 상호작용해야 한다. 몇 가지 상황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세) 등원하면서 가져온 팔찌를 보여주고 싶어 교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경우			
부주의한 지도	이유	바람직한 지도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선생님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간식 챙기느라 정리하느라 바쁘잖아!”</li> <li>“(영아의 팔찌를 뺏어 사물함에 넣고 닫으며) 알았어. 빨리 들어가 앉아. 집에서 물건 가져오지 말라고 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시] 영아의 요구에 대한 경청과 공감 결여</li> <li>[거친 접촉] 영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빼앗음</li> <li>[비난] 영아의 관심과 행동이 약속을 어긴 것으로 반응하여 죄책감 갖게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 “어서와! □□이가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구나? 팔찌 선생님에게 보여주고 싶니?”</li> <li>[한계설정] “선생님도 정말 궁금한데, 지금은 친구들을 맞이해야 하고 간식도 나눠주고 있어. 가방 있는 곳에 갈 수가 없는데 기다려줄래?”</li> <li>[대안제시] “잠깐만~ 친구들 맞이하고 같이 이야기하자. 간식 먹고 조금 후에 같이 보자 기다려줘서 고마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난] 특정 유아를 가리켜 죄책감이 들게 함</li> <li>[무시] 요구 경청과 정서 공감의 결여</li> <li>[거짓협박] 비현실적인 인과 관계로 공포감을 위협함 (~하면 ~할거야!)</li> </ul>

(4~5세) 같은 자동차 모형을 서로 갖고 놀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다투고 있는 경우			
부주의한 지도	이유	바람직한 지도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꾸 싸우면 동생 반 쥐버릴 거야. 아니면 선생님이 가져가 버릴 거야.”</li> <li>“너! 다른 거 가지고 놀면 안 되니? 왜 니들은 꼭 같은 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럼 둘 다 못 놀게 할 거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시] 놀이감에 대한 요구에 대한 경청과 공감 결여</li> <li>[거짓협박] ~하면 ~한다(비현실적 결과)로 위협함</li> <li>[비난] 요구 표현에 대해 죄책감을 갖게 함</li> <li>[비존중] 두 입장 모두 고려한 중재자 역할이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청] “□□이가 고기를 잘 먹는구나. 시금치는 먹기 싫어?”</li> <li>[한계설정] “고기만 먹으면 응가도 잘 안 나오고 배도 아플 수 있어. 오늘은 시금치를 조금만 먹어볼까?”</li> <li>[기다려주기] “선생님이 먼저 먹어보고 얘기해 줄게. 와~ 고소하다. □□이는 어떻게 할래? (조금 먹은 후) 와~ 우리 □□이가 시금치를 먹었네. 더 튼튼해지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시] 개인적 요구에 대한 경청이 없음</li> <li>[비난] 유아의 행동에 대한 확증편향을 보임</li> <li>[거짓협박] 유아의 요구와 상반되는 지침을 강요함</li> <li>차별 정서적 공감과 선택적 대안제시 없음</li> <li>유아가 남겨질까봐 불안하여 식욕이 저하됨</li> </ul>

바람직한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 (다투고 있다면 잠시 떨어지게 한 후) “○○이와 □□이, 둘이 싸워서 속상하구나?”</li> <li>[경청] “잠시만 선생님하고 얘기할까? (이야기를 들은 후) 서로 같은 놀잇감을 가지고 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li> <li>[한계설정] “놀잇감은 하나인데 원하는 친구는 여럿일 때 어떻게 하기로 했지? 우리가 약속을 정할 수도 있어!”</li> <li>[대안제시] (유아의 생각을 듣고) “아~ 그런 방법도 있구나. ○○이는 어때? □□도 그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하니?”</li> <li>[기다려주기] “그럼 ○○와 □□가 생각한 방법으로 놀이해보자. 이따 정리시간에 둘이서 재미있게 어떻게 놀았는지 이야기 들려줘.”</li> </ul>
------------	--

(2세) 친구들이 정리정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계속 놀이하며 정리하지 않는 경우			
부주의한 지도	이유	바람직한 지도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른 친구들은 모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왜 너만 놀고 있니?”</li> <li>“놀잇감을 제자리에 놓지 않으면 놀잇감이 너를 미워 할 거야.”</li> <li>“네가 놀이한 것은 바구니에 넣어야지. 뭐하고 있니? 제자리 정리 안하면 앞으로 놀이 못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난] 특정 유아를 가리켜 죄책감이 들게 함</li> <li>[무시] 요구 경청과 정서 공감의 결여</li> <li>[거짓협박] 비현실적인 인과 관계로 공포감을 위협함 (~하면 ~할거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계설정] “□□아, 지금은 정리시간이란다. 놀잇감 정리하고 맛있는 점심먹자.”</li> <li>[대안제시] “선생님하고 같이 정리하자! 이 놀잇감은 어디에 넣어야 하지?”</li> <li>[기다려주기] “그래~ □□이가 제자리를 잘 알고 있네. 바구니에 담아 볼까? 와~ 우리 □□이가 정리를 잘 하는구나.”</li> </ul>	

(3세) ‘고기’ 등 특정 음식 위주로 먹고 ‘야채’ 등은 전혀 먹지 않는 등 편식을 하는 경우			
부주의한 지도	이유	바람직한 지도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는 고기만 먹니? 채소는 하나도 안 먹었네. 그러면서 맨날 고기 더 달라고 하니?”</li> <li>“안 돼. 채소 다 먹어야지 고기 줄 수 있어, 채소가 얼마나 몸에 좋은데?”</li> <li>“그렇지 얘들아~ 야채 다 먹은 친구들은 바깥놀이 나가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시] 개인적 요구에 대한 경청이 없음</li> <li>[비난] 유아의 행동에 대한 확증편향을 보임</li> <li>[거짓협박] 유아의 요구와 상반되는 지침을 강요함</li> <li>차별 정서적 공감과 선택적 대안제시 없음</li> <li>유아가 남겨질까봐 불안하여 식욕이 저하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청] “□□이가 고기를 잘 먹는구나. 시금치는 먹기 싫어?”</li> <li>[한계설정] “고기만 먹으면 응가도 잘 안 나오고 배도 아플 수 있어. 오늘은 시금치를 조금만 먹어볼까?”</li> <li>[기다려주기] “선생님이 먼저 먹어보고 얘기해 줄게. 와~ 고소하다. □□이는 어떻게 할래? (조금 먹은 후) 와~ 우리 □□이가 시금치를 먹었네. 더 튼튼해지겠다.”</li> </ul>	

(0~1세) 낮잠 시간에 영아가 잠을 안자고 일어나려고 하는 경우			
지도	제시하는 내용		
	부주의한 지도	이유	방법
 부주의한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얼른 자야지!! 경찰아저씨한테 ○○이 잡아 가세요 전화해야겠다!”</li> <li>• (낮잠 매트 위에 눕히고 영아의 등을 힘주어 두드리며) “잠투정 하지 말고 눈 감아!, 빨리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시] 개별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음</li> <li>• [거친 접촉] 토닥임에 감정이 실려 힘이 들어감</li> <li>• [거짓협박] 공포는 오히려 각성하게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 및 한계 제시하기의 방법</li> </ul>
 바람직한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청] “우리 ○○이 심심해요. 친구들이 자려고해요. 꿈속에서 만나야겠다.”</li> <li>• [한계설정] “누워보자. 이불이랑 베개가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선생님이 ○○이 곰돌이 이불 덮어줄게요.”</li> <li>• [대안제시] “선생님이랑 노래 소리 들어보자! 어떤 낮잠 노래인가. 선생님이 토닥토닥 해줄게.”</li> </ul>		

- 부주의한 지도 대신 경청, 공감, 대안 및 한계 제시하기 등의 긍정적인 영유아 권리존중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 경청하고 공감하기의 방법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감정과 마음을 함께 느끼고 있음을 다음의 방식으로 표현해준다.	
1)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표정과 행위의 특성을 관찰하여 알아차린다. (영유아의 눈물, 징그리거나 화난 표정, 다른 영유아를 깨물고 때리는 행위 등)	
2) 보육교사는 자신이 관찰한 표정과 행위를 영유아의 감정과 연결하여 표현해준다. “네가 <u>눈물을 흘리는 것을</u> 보니까 <u>정말 슬프구나.</u> ” (표정) (감정) “네가 <u>친구를 때린 것은</u> 화가 나서 그런 거구나.” (행위) (감정)	
3) 보육교사는 영유아가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행위에 대해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000이가 마음대로 장난감을 가져갔어요.” “화가 나서 때렸어요.”	
4) 보육교사는 영유아가 표현한 감정과 행위를 설명해 주어 다시 한번 영유아의 마음을 경청하고 공감한다. “친구가 너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장난감을 가져가서 너무 화가 났구나. 그래서 친구를 때린 거구나.”	

\*유의점: 경청하고 공감하기에서는 영유아의 감정이나 행위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여 지도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 대안 및 한계 제시하기의 방법

보육교사는 영유아가 스스로 대안을 생각하게 하거나 영유아에게 한계를 제시하여 놀이하도록 한다.

- 1) 보육교사는 영유아에게 스스로 대안을 생각하도록 하거나, 2~3개 활동이나 놀이 또는 다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선택하게 한다.

“00아,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00아, \*\* 해 볼래? ## 해 볼래?”

- 2)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선택을 격려한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보자.”

“네가 선택한 00이도 재미있는 거였구나!”

- 3) 보육교사는 영유아에게 한계(공간, 시간, 놀잇감 유형 및 개수, 규칙 등)를 제시하여 활동이나 놀이의 허용 범위를 정한다.

“오늘은 네가 원하는 대로 00까지만 더 놀이할까?”

“우리가 00이를 즐겁게 하기 위해 어떤 규칙이 필요할까?”

- 권리존중 지도를 하여도 때로 영유아가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거나 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나 좌절로 인한 아동학대의 함정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보육교사는 ‘멈추기’를 해야 할 때가 있다. 멈추기는 영유아의 곁에서 머물면서 영유아가 스스로 진정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다.

#### ▶ 감정 조절하기

- 복식호흡을 10회 하기
- 잠시 창문 밖을 보며 물을 마시기
- 스트레칭을 하며 근육의 긴장을 풀기

#### ▶ 생각하기: 원인과 책임에 대한 즉각적 판단을 유보하고 현재 가능한 해결 지향

#### ▶ 도움 구하기

- 급박한 상황 시 원장과 동료에게 지원을 요청하기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요원에게 지원을 요청하기

- 교사는 멈추기가 반복되면 원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원장은 바람직한 영유아 지도 방안에 대하여 사례 지도를 하도록 한다. 또한 부모 혹은 보호자와 소통하며 어린이집에서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가정에서도 함께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 PART 2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202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보육교사 행동 요령			어린이집 행동 요령		
일상 수준	지나친 수준		보육교사 행동 요령 실행 상황이 지나친 수준일 때	원장과 부모 및 양육자에게 알리기	부모 및 양육자와 소통하기
<p>경청하고 공감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교사는 영유아의 표정과 행위의 특성을 관찰하여 알아차린다.</li> <li>보육교사는 자신이 관찰한 표정과 행위를 영유아의 감정과 연결하여 표현해 준다.</li> <li>보육교사는 영유아가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행위에 대해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li> <li>보육교사는 영유아가 표현한 감정과 행위를 설명해 주어 다시 한 번 영유아의 마음을 경청하고 공감한다.</li> </ul>	<p>대안 및 한계 제시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교사는 영유아에게 스스로 대안을 생각하도록하거나, 2~3개 활동이나 놀이 또는 다른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선택하게 한다.</li> <li>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선택을 격려한다.</li> <li>보육교사는 영유아에게 한계(공간, 시간, 놀이감 유형 및 개수, 규칙 등)를 제시하여 활동이나 놀이의 허용 범위를 정한다.</li> </ul>	<p>멈추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교사는 숨을 고르고, 진행하던 지도(경청, 공감, 대안 및 한계 제시 등)를 멈춘다.</li> <li>영유아의 곁에 머물며 영유아가 스스로 진정할 수 있도록 기다린다.</li> <li>영유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li> </ul>	<p>보육교사는 지도를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영유아는 지도를 거부할 때(울음, 고집, 떼쓰기 등)</p>	<p>• 보육교사가 '멈추기'를 실행하였을 경우, 부모 및 양육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원장에게 보고한다.</p> <p><b>보육교직원과 협의하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교사는 원장 및 보육교직원과 행동 요령 실행 과정의 경험을 나눈다.</li> <li>'멈추기' 행동 요령 실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나눈다.</li> <li>동료 보육교직원과 비슷한 경험을 나눈다.</li> <li>원장은 보육교사 행동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수용하고 격려한다.</li> </ul>	<p>• 해당 보육교사가 '부모 및 양육자에게 알리기'를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원장은 해당 부모 및 양육자의 입장을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개별 상담을 한다.</p> <p>• 원장은 부모 및 양육자에게 '보육교사 행동 요령'과 '어린이집 행동 요령'을 교육한다.</p>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2020)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 빈번 발생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 설명서를 참조할 것

발달이 늦은 영유아를 위한 긍정적 행동 지원 사례			
단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제행동의 확인</li> <li>우선순위의 결정</li> </ul>		
1단계 문제의 정의와 우선순위의 결정	우선순위	문제행동	문제행동의 예
	1	파괴	아동이나 주위사람의 건강이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행동으로 최우선순위에 속함(물기, 때리기, 눈 찌르기, 머리 흔들기, 굵기 등)
	2	방해	집, 교육기관,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 참여를 방해하고, 교실에서 뛰어다니는 등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말 안하기, 울기, 남을 밀어제치기 같은 행동도 포함)
	3	분산	귀찮은 행동이지만 해가되지 않는 행동(공공장소에서 손을 계속 흔들기, 반향어 하기, 몸 흔들기, 책 찢기 등) 중재 계획은 하지 않으나 대체행동으로 지도
2단계 정보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에 대한 이해 필요: 정보 모으기</li> <li>행동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분석 : A-B-C 분석</li> </ul>		
선행사건(A)	문제행동(B)	후속결과(C)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웃으면서 공기놀이를 하고 있다. 철수는 함께 하는 친구가 없어 혼자 돌아다닌다.	철수는 재미있게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공기를 빼앗는다.	친구들이 공기놀이를 멈추고 “저리가”하고 말하면서 철수 손에 있는 공기를 빼앗고 “우리 다른데 가서 하자” 하면서 다른 장소로 가버린다.	
• 가정에서의 정보 수집			
3단계 가설 세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설: 관찰된 선행사건, 행동, 후속결과 사이의 관계를 밝혀줌</li> <li>가설을 위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왜 아동이 이 행동을 지속하는가?</li> <li>- 어떤 선행사건이 문제행동을 일어나게 하며 어떤 선행사건이 문제행동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가?</li> <li>- 문제행동이 사용되는 목적이 무엇인가?</li> <li>- 행동 후에 어떤 후속결과가 일어나는가?</li> <li>- 문제행동이 사용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주의 끌기, 회피하기, 사물을 얻기, 자기규제하기, 감각자극 놀이하기 등)</li> </ul> </li> </ul>		

4단계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의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선행하건 중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의 변화주기(교사, 그룹 변화)</li> <li>- 활동의 변화주기</li> </ul> </li> <li>• 대체행동 지도</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기능</th><th>목적</th><th>문제행동의 예</th><th>대체 행동</th></tr> </thead> <tbody> <tr> <td>관심끌기</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거나 어떤 활동에 참여하기 원함</li> </ul>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이하고 있는 또래들 사이에 가서 놀이감 던지기</li> <li>• 교사가 옆에 있는 친구와 놀이하고 있는데 일부러 친구를 밸로 차기</li> </ul>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 이름 부르기, “같이 놀자”라고 친구에게 말하기</li> <li>• 선생님 이름 부르기, 선생님 손잡기</li> </ul> </td></tr> <tr> <td>회피</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과제나 상호작용을 피하려 할 때</li> </ul>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리 시간에 정리하자는 친구 손물기, 낮잠 시간에 자기 싫어서 울기</li> </ul>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리 시간 미리 알려주기</li> <li>• 조용한 공간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기</li> </ul> </td></tr> <tr> <td>요구하기</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이나 놀이감을 원할 때</li> <li>• 원하는 활동 시</li> </ul>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좋아하는 활동을 중단하거나 끝났을 때 더하려고 책상치기, 원하는 놀이감을 또래가 가지고 놀이하자 또래가 놀던 놀이감을 뺏어가기</li> </ul>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을 들고 요구하기</li> <li>• 또래에게 다가가서 물어보기. 원하는 놀이감 가리키기</li> </ul> </td></tr> <tr> <td>자극 추구</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각 인식이 비정상적으로 예민하면서 계속 강한 자극 찾기</li> </ul>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시로 일과 도중에 손 빨기, 놀이 중 바지 앞섶에 손을 넣기</li> </ul>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 씻고 오기(물 마시기)</li> <li>• 소근육 놀이 활동 참여하기</li> </ul> </td></tr> </tbody> </table>	기능	목적	문제행동의 예	대체 행동	관심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거나 어떤 활동에 참여하기 원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이하고 있는 또래들 사이에 가서 놀이감 던지기</li> <li>• 교사가 옆에 있는 친구와 놀이하고 있는데 일부러 친구를 밸로 차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 이름 부르기, “같이 놀자”라고 친구에게 말하기</li> <li>• 선생님 이름 부르기, 선생님 손잡기</li> </ul>	회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과제나 상호작용을 피하려 할 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리 시간에 정리하자는 친구 손물기, 낮잠 시간에 자기 싫어서 울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리 시간 미리 알려주기</li> <li>• 조용한 공간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기</li> </ul>	요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이나 놀이감을 원할 때</li> <li>• 원하는 활동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좋아하는 활동을 중단하거나 끝났을 때 더하려고 책상치기, 원하는 놀이감을 또래가 가지고 놀이하자 또래가 놀던 놀이감을 뺏어가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을 들고 요구하기</li> <li>• 또래에게 다가가서 물어보기. 원하는 놀이감 가리키기</li> </ul>	자극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각 인식이 비정상적으로 예민하면서 계속 강한 자극 찾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시로 일과 도중에 손 빨기, 놀이 중 바지 앞섶에 손을 넣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 씻고 오기(물 마시기)</li> <li>• 소근육 놀이 활동 참여하기</li> </ul>
기능	목적	문제행동의 예	대체 행동																		
관심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거나 어떤 활동에 참여하기 원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이하고 있는 또래들 사이에 가서 놀이감 던지기</li> <li>• 교사가 옆에 있는 친구와 놀이하고 있는데 일부러 친구를 밸로 차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 이름 부르기, “같이 놀자”라고 친구에게 말하기</li> <li>• 선생님 이름 부르기, 선생님 손잡기</li> </ul>																		
회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과제나 상호작용을 피하려 할 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리 시간에 정리하자는 친구 손물기, 낮잠 시간에 자기 싫어서 울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리 시간 미리 알려주기</li> <li>• 조용한 공간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기</li> </ul>																		
요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이나 놀이감을 원할 때</li> <li>• 원하는 활동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좋아하는 활동을 중단하거나 끝났을 때 더하려고 책상치기, 원하는 놀이감을 또래가 가지고 놀이하자 또래가 놀던 놀이감을 뺏어가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을 들고 요구하기</li> <li>• 또래에게 다가가서 물어보기. 원하는 놀이감 가리키기</li> </ul>																		
자극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각 인식이 비정상적으로 예민하면서 계속 강한 자극 찾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시로 일과 도중에 손 빨기, 놀이 중 바지 앞섶에 손을 넣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 씻고 오기(물 마시기)</li> <li>• 소근육 놀이 활동 참여하기</li> </ul>																		
5단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계획의 적절성 평가</li> <li>- 계획 수정</li> </ul> </li> </ul>																				

출처: 보건복지부(2021).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성인은 교사이며, 교사의 정신건강은 영유아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교사가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우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직무에 불만족을 느끼는 경우 등은 영유아의 정서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보육교사는 평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의식적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지속적인 감정부조화로 정신적 소외감, 감정마비, 소진을 경험할 때
- 과다한 업무로 시간 부족을 느낄 때
- 직무상 발생한 문제를 해결 못하여 전문성 부족을 느낄 때
- 업무의 자율성이 부족하여 조정이 불가하다고 느낄 때
- 업무 여건과 환경이 불안정할 때
- 동료와의 갈등관계에 있을 때
- 영유아의 보호자가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

-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순환하기 위해 행동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상황이 어렵다는 생각을 차단하고 현재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자신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료와 함께한다는 연대감과 소속감을 공유하기
- 자신이 현재 느끼는 소소한 감사와 즐거움에 대해 표현하기
- 자신이 노력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에 대해 나누기
-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나누기

- 스스로 정신건강 상태 점검을 하고 필요 시 도움을 구하도록 해야 한다.

- 한국보육진흥원 마음 성장 프로젝트, 정신적 웰빙상태 검사, 우울감 진단 검사<sup>1)</sup> 등을 해보고 수치를 확인 후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구하기
- 교사 회의나 면담 등을 통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업무 재조정을 요청하기
- 취미 생활, 가벼운 산책, 운동, 명상 등 개인적인 충전시간을 가지기

1) 해당 검사 문항은 보건복지부(2021).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부록 참조.

## 스트레스 관리 사례: 부모와의 소통이 힘들어요.



## [교사의 고민]

“요즘은 아이들보다 부모님과 소통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한 명의 아이만 보는 것이 아닌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어떤 부모님은 낮잠을 꼭 재워 달라 하시고, 또 다른 부모님은 낮잠을 재우지 말라 하시고요. 작은 상처에도 선생님은 뭐 하셨냐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부모와 신뢰감 형성

- 영유아 관련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세요.
- 상황 모면을 위한 대처는 부모의 불신을 유발할 수 있어요.

(교사) “하원 준비하면서 보니까 영진이 팔에 멍이 들어 있네요. 바깥놀이터에서 다친 것 같은데 제가 잘 보지 못 했습니다. 죄송해요.”

(부모) “아니에요. 영진이가 다쳐서 속상하지만 선생님께서 상황을 알려주셔서 안심이 됩니다.”

## ● 보육교사와 부모의 양방향 의사소통

- 개별수첩, 전화, 등·하원 상담 등의 비정기적상담 등을 활용하여 양방향 의사소통을 해주세요.
- 연 2회 정기 부모상담 시에는 영유아 관찰기록 등을 바탕으로 보육전문가로서 상담을 해주세요.

## ● 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하여 부모참여 기회 제공

- 부모참관, 부모교육, 부모참여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어린이집에 부모참여 독려해 주세요.

출처: 보건복지부·어린이집안전공제회·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1). 2021 아동학대 예방 교육 교육자료

## 2. 어린이집 원장의 역할

- 어린이집 원장은 **니어미스(Near Miss)** 수준에서의 적극적 중재·관리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 **채용심사 및 기본 예방교육:** 채용 시 면접 및 서류를 통해 지원자의 현장적응 능력을 다면적으로 평가한다. 채용이 확정된 이후, 보육교직원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초기 오리엔테이션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본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 채용 심사시 ‘영유아 이해 및 현장 적응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질문을 활용해보세요.

- 영유아 학대 신고가 의무인 것을 알고 있는가? 영유아 학대 신고 전화번호는 무엇인가?
- 영유아 학대의 정의와 유형은 무엇인가요?
- 영유아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신체적 상흔, 무단 결석 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동료 교사의 학대 행위를 목격한 경우 어떻게 하겠나요?
- 부모가 부주의한 지도에 민원을 제기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처 : 어린이집 평가제 매뉴얼(2021)에서 일부 내용 참고



- **정기 예방교육:** 원장은 ‘아동학대 관련 법적 의무교육’을 포함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보육교직원들이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아동학대(의심)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방적 교육보다는 보육교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스스로를 점검하고 보육활동에 적용시킬 수 있는 실제적 교육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과 방법의 예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	교육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교육(법적 의무교육, 각 연 1회)</li> <li>•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학대사례 및 발생 원인</li> <li>• 어린이집 영상정보 처리기기 열람 요청 사유 및 절차</li> <li>• 어린이집 내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의 중요성과 실제</li> <li>• 아동권리존중(혹은 부주의한 지도) 자가점검 체크리스트</li> <li>• 보육교직원의 정신건강 점검 및 스트레스 대처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장학</li> <li>• 온라인 교육</li> <li>• 전문가 초빙</li> <li>• 외부 교육 참여(지역연합회 혹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최교육 등)</li> </ul>

부주의한 지도 체크리스트				
보육 중에 아래의 부주의한 지도 상황이 생긴 적이 있었나요?			거의 없음	종종 있음
무시	1. 영유아의 요구를 일부러 못들은 척 함 (예: 영아가 좋아하는 반찬을 더 달라고 하는 요구를 무시)	0	1	2
	2.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방관함 (예: 영유아가 산책하다가 넘어져 우는데 선생님을 부를 때까지 돋지 않음)	0	1	2
	3.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반 전체에 맞추라고 함 (예: 낮잠 시간에 먼저 일어난 유아에게 일어나지 말고 다시 누우라고 함)	0	1	2
비난	4. 실수 행동의 책임을 영유아에게 돌려 수치심을 갖게 함 (예: “두 눈 똑바로 보고 다니지 않아서 넘어졌지!”)	0	1	2
	5. 문제의 원인을 영유아에게 전가하여 죄책감을 갖게 함 (예: “네가 뭘 잘못 했으니까 안 놀아주지! 친구들이 괜히 그러겠냐?”)	0	1	2
	6. 발달에 부적합한 기대를 하여 영유아의 실수를 추궁함 (예: “이거 누가 훌렸어? 똑바로 앉아서 먹지 않은 친구 누구야?”)	0	1	2
조롱	7. 교사들끼리 영유아의 미성숙을 비웃음 (예: “우리 반 큰 아기, 오늘 또 운다! 선생님 재 왜 또 울어요?”)	0	1	2
	8. 다른 영유아들과 성취와 능력을 비교하며 비하함 (예: “친구들은 혼자 잘하는데 너는 왜 선생님 올 때까지 안하고 기다리니?”)	0	1	2
	9. 대집단 활동 시 영유아의 행동과 처벌에 대해 토론을 함 (예: “약속 어긴 친구들은 우리 반 아니었으면 좋겠지요?”)	0	1	2

거짓 협박	10. 기대행동을 안하거나 못하면 기회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함 (예: “놀잇감 가지고 한번 만 더 싸우면 다른 반에 가져다 줄 거야.”)	0	1	2
	11. 서둘러 일을 해결하기 위해 조건을 걸어 강요함 (예: “열까지 셀 동안 정리하지 않으면 오늘 점심 못 먹는다.”)	0	1	2
	12. 영유아 행동 통제를 위해 공포스러운 귀걸을 예고함 (예: “낮잠 자야 엄마 오시지? 안자면 엄마 오지 말라고 할 거야.”)	0	1	2
차별	13. 영유아 개인의 특성에 대해 언급하며 비호감을 표시함 (예: “선생님! 얘 좀 달래 봐요! 얘는 나랑 코드가 안 맞아.”)	0	1	2
	14. 다른 영유아와 비교하며 놀림 (예: “아기처럼 언제까지 기저귀 찰래? 기저귀찬 친구는 별로야.”)	0	1	2
	15. 빌달이 늦은 영유아의 활동 참여 기회를 막음 (예: 현장학습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면서 참여하지 못하게 함)	0	1	2
거친 접촉	16. 영유아가 규범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다소 거칠게 물리력을 행사함 (예: 순서를 지키지 않는 아이에게 뒤로 가라고 손을 대는데 아이가 밀쳐짐)	0	1	2
	17. 영유아가 사용 중인 사물을 함부로 다루어 불쾌감을 느끼게 함 (예: 낮잠시간에 영유아가 누워 있는 매트를 밟고 밀며 이동시킴)	0	1	2
	18. 안전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함 (예: 뛰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뛰어다녀서 손으로 확 잡음)	0	1	2

• 사례장학지도: 원장은 사례 장학지도를 통해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개별성을 이해하고, 일과 상황별로 적절한 지도전략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사례 장학은 교사교육이나 회의 시간 등을 활용하며,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전체 교사, 영아반/유아반 교사, 연령별 교사 등으로 집단을 다양하게 하여 융통성 있게 진행할 수 있다.

개별성(영유아 특성 및 기질)에 따른 지도전략 논의_B어린이집 사례
<p>● <b>논의점:</b> 교구장에 올라간 00이를 보고 동료교사인 A선생님이 “00이~ 여기 올라가고 싶었어!”라며 안아서 내려주었는데 저는 안전과 관련된 행동에서는 영아에게 “높은 교구장에 올라가면 안 돼! 위험해!”라고 제한 행동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b>안전예방과 아동존중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야 할까요?</b></p> <p>● <b>우리 어린이집 지도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반 경력교사가 위험 행동 여부를 판단 ▶ 담임 간 동일한 기준 정하기</li> <li>- 안전과 직결된 위험한 행동을 할 경우 ▶ “00하면 안 돼!”, “000아 때리면 안 돼!” 등의 제한 행동 먼저 지도할 수 있음, 이후 이유 설명, 공감, 대안 등을 지도함</li> <li>- 위험한 행동은 연령별, 원아별로 다르게 최소한으로 규정 ▶ 위험한 행동이라 판단해 행동 제한을 많이 할수록 모험 놀이와 탐색 활동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교사의 관리 능력을 올리고 제한 행동은 최소화하기</li> </ul>

- 상시 모니터링 및 적절한 지원: 원장은 어린이집의 일과 내에서 정기적, 비정기적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권리존중 보육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대상	점검 내용	적절한 지원 예시	참고자료
보육교직원 (교사)	권리존중 보육 (상호작용)	격려와 지원, 모델링 일과운영 시간 조정 개별 면담 통한 지원	부주의한 지도 체크리스트
보육환경 및 근무환경	시설설비, 놀잇감 위생, 안전	위험요인 제거 및 청소 필요시 시설 개보수 놀이환경 개선 지원	환경 점검표
	근무시간 교사 대 아동비율	근무시간표 및 일정조정 대체인력 지원	
영유아	개별 특성에 따른 지원여부	보조교사 추가 지원 가정과 긴밀한 소통	보육일지 관찰일지

- 어린이집 조직문화 관리: 조직문화는 조직 내에서 공식적인 규정을 대체하여 '해도 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판단하고 실천하는데 영향을 준다. 원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 기관의 비전과 가치가 반영된 운영방침 및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보육교직원과 공유함으로써 업무수행 절차가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
- 교사회의 시간 등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및 업무처리 과정에 보육교직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또한 보육교직원들의 업무 고충을 함께 논의하고 지원함
- 존중, 배려, 경청 등 정서적 소통은 조직 구성원의 직무 동기와 조직 내 협업을 높이는 요인이 되므로,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존중하고 배려하여, 보육교직원이 스스로 존중받은 경험을 통해 영유아의 인권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
- 원장은 상시 모니터링과 사례 장학지도, 보육일지 검토 등에서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업무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필요한 경우 초보 교사와 경력 교사 간 멘토링 관계를 통해 업무수행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원장은 처우나 복지를 개선시키기 위해 보육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함.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보육교직원이 업무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회복하고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 원장은 균무 환경 개선 및 조직문화 관리를 통해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즐겁고 행복하게 균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3. 민원 및 신고 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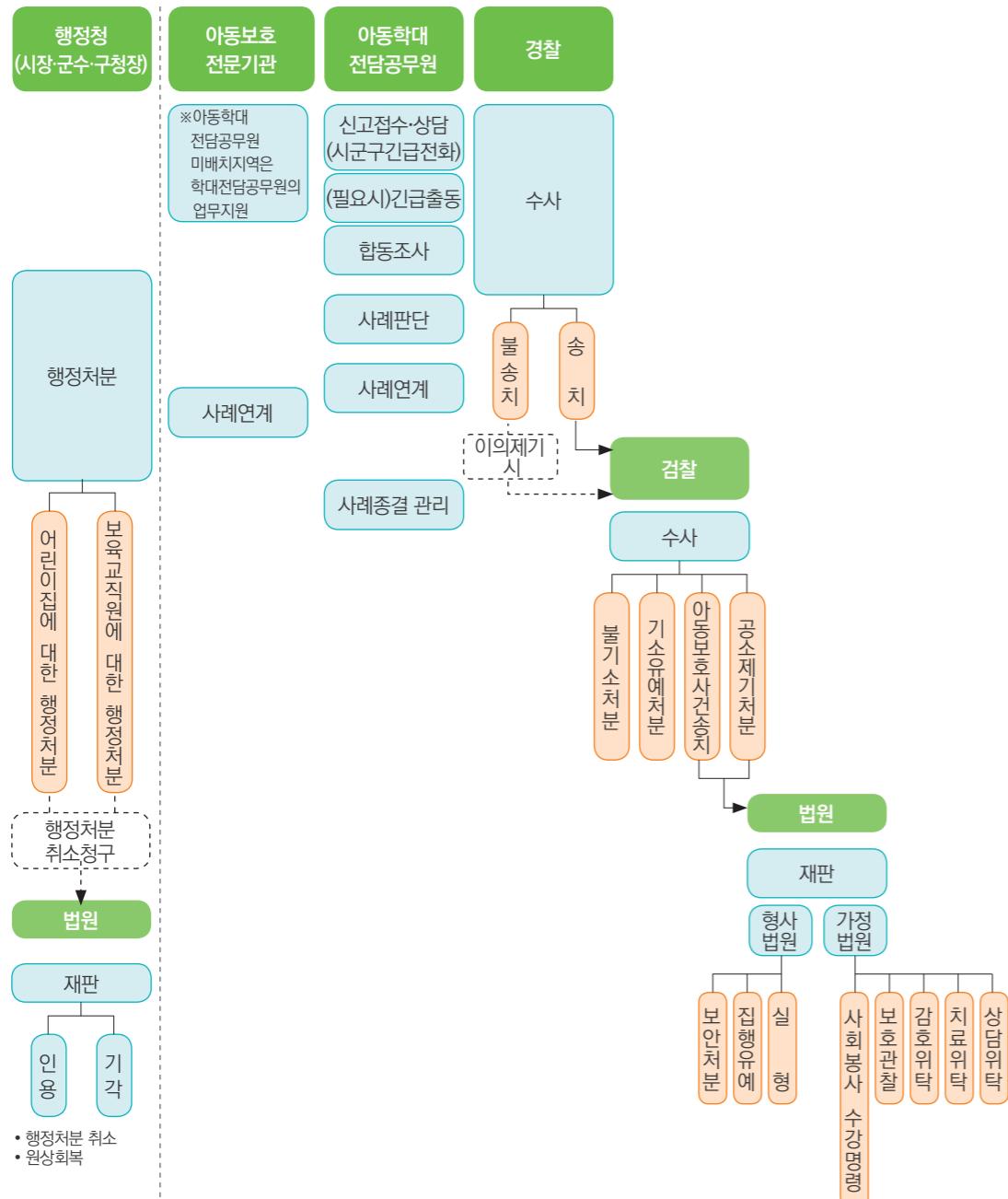
- 보육교직원의 부주의한 지도에 대해 보호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거나 동료에 대한 내부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혹여 사안이 전혀 학대와 무관하다고 생각될지라도 이에 신속하고 진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 원장은 다음의 절차를 기준으로 대응한다.

- 보호자가 보육교직원의 부주의한 지도 사례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을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가능한 속히 보호자를 직접 만나 보호자가 제기하는 문제 상황, 보호자의 요구 등을 주의 깊게 경청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보호자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된 보육교직원을 면담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한다.
- 해당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에게 부주의한 지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과 함께 보호자에게 사과하고, 어린이집에서 향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거나 노력할 내용이 무엇인지 안내하여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자신의 보육행동을 수정하도록 명확하게 요구한다. 그리고 해당 보육교직원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찰 기록하고 논의하여 보육교직원의 영유아에 대한 상호작용 행동이 적합하게 바뀌고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예방 지침,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방법, 보육교직원에 대한 업무 모니터링 방식을 검토, 보완함으로써 어린이집 전체에서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보육교직원들이 긍정적이고 발달에 적합한 보육행동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다른 보육교직원이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원장은 다음의 절차를 기준으로 대응한다.

-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내에서 다른 보육교직원에 의해 영유아에 대한 부주의한 지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간과하지 말고 즉시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문제를 제기한 보육교직원을 면담하여 그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의 깊게 듣고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내부에서 보육교직원 간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보고나 논의 사항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보여 지지 않는 한, 전체 보육교직원과 논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부주의한 지도를 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된 해당 보육교직원을 면담하여 상황에 대해 묻고 그 보육교직원의 설명과 자기변호를 청취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면담 과정에서 해당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보육교직원에게 이를 지적하고 자신의 행위를 수정하도록 명확히 요구한다.
- 원장이나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 내에서 동료 보육교직원에 의해 영유아에 대한 학대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된 사건의 처리 과정



-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되었을 경우 원장과 해당 사안에 연루된 보육교직원은 다음의 절차를 기준으로 대응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수사 개시된 사건에 대해 전체 보육교직원에게 신속히 알릴 필요가 있으며, 신고당한 보육교직원을 포함하여 모든 교직원에게 학대신고 조사절차에 협조하도록 권유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전체 보육교직원에게 해당 사안과 관련된 영유아, 보호자, 신고당한 보육교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의심)에 대해 고소한 피해(의심)아동의 보호자에게 합동조사 실시에 대해 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자체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 등의 조사에 협조하고, 이들이 요청하는 자료 및 관련 서류를 신속히 보여주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언론의 정보요청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고, 다른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언론의 요청과 이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설명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 관련 지침에 따르거나 가용 자원이 있을 경우 신고당한 보육교직원에게 휴가를 주거나 다른 업무를 배정함으로써 이들이 영유아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
- 어린이집 원장은 필요 시 영유아와 보육교직원들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었을 경우 해당 사안에 연루된 보육교직원은 미리 그 사안과 관련하여 사건 조사 공무원 등과 만나는 과정에 대해 준비하도록 하며,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능한 초기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도록 한다.
- 해당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사건 조사 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사안에 대해 설명한 내용, 사안과 관련이 있는 영유아, 보호자, 다른 보육교직원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 관련된 정보 기록, 목격자 리스트 등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 보육교직원은 필요 시 해당 사안에 관련이 있는 동료 보육교직원들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하되,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나 진술할 내용에 대해 변경, 삭제, 추가 등의 압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해당 사안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이나 사건 조사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모든 내용은 한 부를 복사하여 자신이 보관하고, 사건조사 공문원에게 제출한 내용의 경우에는 한 부를 더 복사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제출하도록 한다.
- 본인의 고용상태와 직무 조건을 확인하도록 한다. 어린이집의 지침에 따라 (무급) 휴가를 가야할 경우 언제 어떤 조건에서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다시 업무로 복귀할 수 있는지 등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확인하도록 한다.

출처: 보건복지부(2021).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PART

# 3



##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성 행동문제 예방



영유아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성 행동을 이해하고  
성 행동 수준별로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해  
보육교직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 I 영유아 발달과 성 행동

1. 영유아 성 행동과 성인의 태도
2. 영유아 성 행동 관련 용어의 정립
3. 영유아 성 행동 수준별 특성 이해

### II 영유아의 성 행동 수준별 지도

1. 일상적인 수준의 성행동 지도
2. 우려할 수준의 성 행동문제 지도 및 대응
3. 위험한 수준의 성 행동문제 지도 및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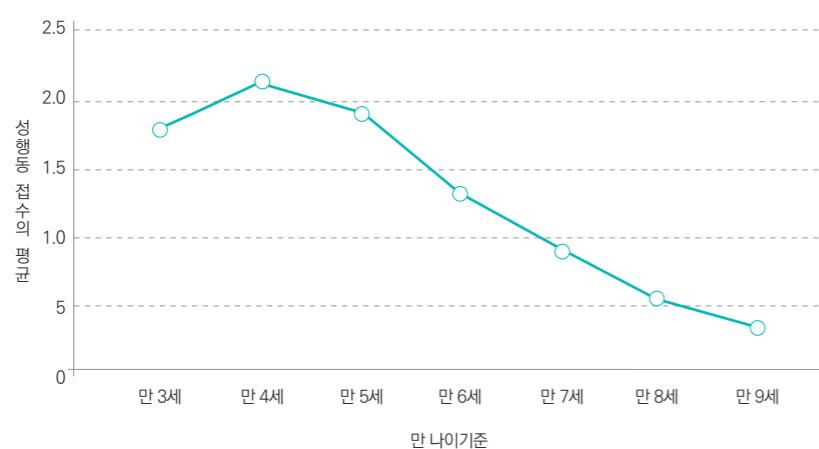
## I

## 영유아 발달과 성 행동



### 1. 영유아 성 행동과 성인의 태도

- 최근 유아 간 성 행동문제 발생으로 인해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성 행동과 성 행동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관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반해 부모와 교사 등 대부분의 영유아 보호자의 성 의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관계부처 합동 대책(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으로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대응체계' 가 마련되었으며, 어린이집 및 지자체 등에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관리·대응 매뉴얼(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21)'이 배포되었다.
- 취학 전 유아와 초등저학년 아동 649명을 대상으로 부모가 보고한 자녀의 성행동을 조사한 연구(강현미, 2022)에서 아동의 성 행동 표출은 유아기에 높아지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 영유아의 성을 출생부터 지속적으로 발달해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성장과 발달, 학습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의 성 관련 행동은 '성 개념의 발달수준'을 반영하며, 성 개념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시도하는 탐색적인 행동이 대부분이다. 영유아는 자신이 한 성 관련 행동의 어느 부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성 행동 및 성 발달을 바르게 이해하여 적절하게 지도함으로써 영유아 성 행동이 성 행동문제로 심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며, 이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 발달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영유아의 성 행동의 대부분은 발달 상 나타나는 행동특성과 유사하게 개방적인 공간에서, 호기심에 의해,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 영유아의 성 관련 행동은 성인과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영유아를 낙인찍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보호자적 관점의 접근이 요구된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착하세요. 대개 유아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이나 부모가 차분히 대하면, 유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혼란, 불안, 부끄러움, 분노감 등을 다룰 힘이 생깁니다.</li> <li>✓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보시게 되면 침착하고 차분하게 중지시켜 주세요.</li> <li>✓ 다른 활동으로 관심과 흥미를 돌리게 도와주세요.</li> <li>✓ 하고 있는 행동을 간단하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하지 않기로 약속한 행동이라고 상기시켜 주세요. (예: 수영복 입는 선 이내로는 친구를 만지지 않기) 이때, 유아가 당황하거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주세요.</li> <li>✓ 우려할 수준 이상의 행동이었다면, 다음을 기록해 놓으세요. (예 : 그 행동의 내용, 맥락, 시간, 장소, 빈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격을 받은 표정을 보이지 마세요.</li> <li>✓ 유아가 당황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언행을 나타내지 마세요.</li> <li>✓ 우려할 수준이거나 혹은 위험한 수준의 행동이라면 못 본 척 무시하고 지나치지 마세요.</li> <li>✓ 유아가 이전에 성 학대를 당했을 거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세요.</li> <li>✓ 유아를 지칭할 때 '가해 유아', '성 폭력 유아'라는 식으로 부르지 마세요.</li> <li>✓ 주변인들과 지나친 정보공유로 사건을 이슈화하지 마세요.</li> <li>✓ 해당 유아 앞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나 전화통화를 나누며 걱정하거나 화내는 행동 등은 자제해 주세요.</li> </ul>



## 2. 영유아 성 행동 관련 용어의 정립

- 영유아 성 관련 행동에 대한 접근방법을 기초로 영유아 성 관련 행동에 대해 성폭력, 성폭행, 학대, 가해 등의 용어 대신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용 어	의 미
영유아의 성 행동	영유아가 성장 발달하면서 나타내는 성과 관련된 행동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영유아가 해당 연령의 자연스러운 발달 특성에서 벗어나 우려하거나 위험한 수준의, 혹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성 행동 또는 행동에 따른 문제
피해 영유아	또래의 성 행동문제로 심리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입은 영유아
행위 영유아	성 행동문제로 또래에게 피해를 입힌 영유아 (낙인이 되지 않도록 '가해 영유아'라는 용어 사용하지 않음)



## 3. 영유아 성 행동 수준별 특성 이해

- (수준별 판단기준) 연령별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행동을 기준으로 '주의 전환 가능 여부', '지속성 및 반복성', '은밀한 행동', '강요 및 폭력성', '심신의 피해 발생' 등을 통해 판단한다.
- (영유아 성 행동 수준) 판단 기준에 따라 '일상적인 수준(초록색)', '우려할 수준(노란색)', '위험한 수준(빨간색)'으로 구분한다.

구분	수준	판단기준	행동의 특성
성 행동	일상적인 수준 (일반적인 성 관련 행동)	• 다른 관심사로 주의 전환 가능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놀이를 제안하면 관심을 보인다. 예: 밀가루 반죽 놀이할까? 친구들은 지금 빵을 만들고 있대</li> <li>교사에 의해 중지하거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다. 예: 소변 볼 때 들여다보면 친구가 불편해 하지? 블록놀이 하려 갈까?</li> </ul>
+ 지속성, 반복성, 은밀			
성 행동 문제	우려할 수준	• 지속성 • 반복성 • 은밀한 행동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가 다른 놀이로 흥미를 끌어도 성 행동의 중단이 어렵다.</li> <li>잠시 멈추었다가도 교사가 다른 곳으로 가면 성 행동을 반복하고 지속한다.</li> <li>교사의 눈을 벗어나는 은밀히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반복하여 나타난다.</li> </ul>
+ 강요 및 폭력성, 심신의 피해 발생			
성 행동 문제	위험한 수준 (또래 간 성적 괴롭힘 포함)	• 지속성 • 반복성 • 은밀한 행동 여부 • 강요 및 폭력성 • 타인의 심신 피해 발생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려할 수준의 성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다른 놀이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낮거나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li> <li>유아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할 때 저항하거나 분노 행동을 보인다.</li> <li>또래에 대한 강요나 폭력적 성향이 나타나며 교사의 눈을 피해 은밀한 장소로 또래를 데리고 가기도 한다.</li> <li>또래 유아의 성기에 상처가 나거나 불안해하는 등 신체 정서상 피해가 발생한다.</li> </ul>

- 일상적인 수준: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생기면서 남녀의 생물학적 생김새에 대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 나타난다. 또래 엿보기 등 일시적인 성 행동을 보이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거나 신체 탐색 중 우연히 하게 되는 성기 자극 등의 성 관련 행동들을 일상적인 수준의 성행동으로 볼 수 있다.
- 우려할 수준: 일상적인 성 관련 행동이 지속적이고 은밀하게 반복되는 동시에 놀이에 대한 관심이나 주변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줄어든다면 '일상적인 수준'을 벗어나 '우려할 수준의 성 행동문제'로 볼 수 있다. 우려할 수준에서는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 행동에 몰두하거나, 또래를 불편하게 하는 성 행동을 하며 성인의 눈을 벗어나는 장소에서 시도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 위험한 수준: 유아의 성 관련 행동이 강압적이거나 폭력성을 띠게 되면 '우려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해 영유아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뚜렷이 나타나거나 피해 영유아를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 '위험한 수준의 성 행동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위험한 수준의 성 행동문제'의 경우 놀이에 대한 관심이나 주변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현저하게 줄어들며, 간혹 성 행동이 지속되거나 반복하여 나타나는 우려할 수준을 거치지 않고 강요나 폭력성이 바로 나타나기도 하므로, 성 행동 문제의 발견 횟수보다는 피해를 유발할 위험 정도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영유아 성 행동 지도와 성 행동문제 예방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역할

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 성교육 담당교사 지정</li> <li>어린이집 교사 영유아 성교육 및 성 행동문제 대응 관련 교육 이수 지원</li> <li>영유아 성 행동 문제 발생 시 담당교사와 함께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요청 및 자체 보고 등 외부 대응 총괄</li> <li>CCTV, 정황 자료 등을 보존하여 자체·육아종합지원센터 초기조사 협조</li> </ul>
영유아 성 교육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장으로부터 지정된 영유아 성교육 담당교사는 매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어린이집 내 각 반 교사에게 전달 교육 실시</li> <li>어린이집 영유아 성 행동(문제) 지도교육 상시 관리</li> <li>영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 및 일상적인 행동에 대한 부모 소통·교육 기획</li> <li>영유아 성 행동 문제 발생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문 및 지원 요청 등 대응</li> </ul>
보육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 성교육 담당교사로부터 전달 교육 이수(온라인교육 영상 활용)</li> <li>담당 아동에 대한 영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 지도 및 관찰</li> <li>영유아 성 행동문제 발생 시 행동중지, 상황 파악 후 영유아 성교육 담당교사에 즉시보고(대응 매뉴얼, 대응 요령 숙지)</li> </ul>

## II

## 영유아의 성 행동 수준별 지도



## 1. 일상적인 수준의 성행동 지도

- 일과 중 놀이나 일상생활에서 지도하는 경우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및 행동	성 행동 지도방법
• 자신의 신체 탐색 중 우연히 하는 성기 자극 등의 성 행동	→ • 다양한 흥미 중 하나로 나타난 행동이므로, 흥미를 보일만한 놀이로 관심 전환한다.
•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놀이를 찾지 못하는 지루한 상황에서 하는 성 행동	→ • 편안한 분위기에서 잠들 수 있도록 재워주고, 흥미 있는 놀이를 찾아 놀이상대가 되어준다.
• 갑작스런 양육 환경의 변화로 인한 불안감에 의해 나타난 성 행동	→ • 불안감 해소를 위해 부모면담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한다.
• 다른 사람의 관심과 주목을 끌기 위해 시도하는 보여주기, 엿보기 등 성 행동	→ • 흥미 있는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다.
• 놀이 중 성역할에 대한 모방행동으로서 표현하는 성 행동	→ • 성 행동에 주목할수록 자꾸 하려고 하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무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남녀의 성적 특징에 대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또래 엿보기 등 일시적인 성 행동	→ • 유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관심과 애정을 표현한다.
• 성적 자극이 많은 환경으로 인해 성에 대해 강한 흥미와 관심을 표현하는 성 행동	→ • 역할에 대한 표현행동 중 하나로 인정하면서 다양한 역할 표현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준다.
	→ • 자연스러운 호기심의 표현이므로 일시적 행동으로 반응한다.
	→ •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통해 남녀 신체의 차이를 알려주는 등 관심을 해소시켜준다.
	→ • 성과 성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이므로, 남녀 성기의 차이점에 대해 성교육 뿐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알려주며 관심 수용한다.
	→ • 흥미를 가질만한 놀이를 제공하여 관심을 다른 곳으로 확산시켜 준다.

## [참고자료]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20).

영유아 성 행동 이해(교육용 영상 시리즈 10편).

[유튜브에서 제목 검색 시청 가능]



- 활동으로 구성하여 지도하는 경우

#### 첫째, 경계 존중 : 너의 공간, 나의 공간

- 나만의 공간이 있어요 – 나와 다른 사람의 경계 알고 존중하기
- 내가 손잡아도 될까? – 동의 구해야 할 상황 인지하기
- 장난으로 친구의 몸을 만져도 될까요? – 타인 신체와 의견 존중

#### 둘째, 신체 안전 : 내 몸의 주인은 바로 나!

- 다른 사람이 만지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 나와 타인 신체 존중
- 안전한 느낌, 안전하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 안전한 느낌과 안전하지 않은 느낌 인지
- 비밀, 약속, 규칙은 다 지켜야 하나요? – 지키지 말아야 하는 비밀, 규칙, 약속
- 안전지킴이의 도움을 받아요 – 위험 상황 인지 및 도움 요청

#### 셋째, 관계와 접촉 : 친구 사이 지켜야 할 예의

- “좋아”, “싫어”라고 이야기해요 – 내 몸이 나의 것임을 인지하고 의사 표현하기
- 친구가 대답을 안 해요! 좋다는 걸까요? – 움짓이나 표정으로 표현하는 비동의 인지하기
- 친구야!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 위험 인지하고 친구 도와주기

## 2. 우려할 수준의 성 행동문제 지도 및 대응

- 행동 특성 및 사례

행동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지속하거나 행동에 몰두한다.</li> <li>• 또래에게 성 행동을 하여 불편하게 한다.</li> <li>• 피해 유아가 피하려 해도 계속하기도 한다.</li> <li>• 성인의 눈을 벗어나는 장소에서 시도하려는 경향이 보인다.</li> </ul>

행동문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 유아가 싫다고 해도 엿보는 행동을 반복한다.</li> <li>• 성적인 행동과 연관된 동작을 흉내 내는 행동을 한다. (뽀뽀할 때 혀를 내밀어 입에 넣으려하기 등)</li> <li>• 또래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만져보려 하는 행동을 한다.</li> </ul>

- 지도 및 대응 방법

대응방법	내용	담당
상황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되는 행동 중지한다.</li> <li>• 관련 영유아를 떼어 놓고 상황 파악한다.</li> </ul>	보육교사
원장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된 행동과 상황을 원장에게 보고, 기록한다.</li> </ul>	보육교사
상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직원 보고 사실 확인한다.</li> <li>– 해당 반 상황 및 관련 영유아 행동 관찰한다.</li> <li>– 필요시 교사의 부모면담 지원, 부모면담 직접 실시한다.</li> </ul>	원장
부모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에게 상황 설명, 가정에서 관심을 갖고 함께 지도하도록 한다.</li> <li>• 필요시 전문가 도움 권유한다.</li> </ul>	보육교사, 원장
외부지원 요청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기관, 전문가 자문 및 지원 요청한다.</li> </ul>	원장
환경점검 및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환경 및 보육일과 점검(낮잠시간 등 하루 일과가 지루하거나 교사관리가 미비한 시간대 확인 등), 개선사항 살핀다.</li> <li>• 개별 상황에 따른 행동지도 계획, 실행한다.</li> <li>• 교직원 및 영유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 행동문제 개선 위한 교사 역할 및 유아 성교육 실시</li> <li>• 부모 대상 교육 실시(필요시)</li> </ul> </li> </ul>	보육교사 원장

#### [참고자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0).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등을 위한 성인지교육 교재(3종)

[포털에서 제목 검색,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3. 위험한 수준의 성 행동문제 지도 및 대응

- 행동 특성 및 사례

행동의 특성	행동문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가 저지하거나 주의 돌릴 때 저항, 분노한다.</li> <li>행위 영유아와 피해 영유아 간 연령 및 힘의 차이가 뚜렷하다.</li> <li>피해 영유아가 거부해도 고의적, 강압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을 한다. (피해 영유아 고통스러워 함)</li> <li>피해 및 행위 영유아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 나타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또래에게 성적 놀이에 참여하라고 강요한다.</li> <li>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보여주거나 강압적으로 만진다.</li> <li>지속적으로 타인의 성기를 만지려고 시도한다.</li> <li>성인의 성 행위를 명백하게 흉내 낸다.</li> <li>피해 영유아의 신체에 물체나 성기 집어넣는다.</li> </ul>

- 지도 및 대응 방법

대응방법	내용	담당
상황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즉각 개입하여 행동 중지한다.</li> <li>영유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안정된 태도 유지한다.</li> </ul>	보육교사
원장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지 즉시 원장에게 보고한다.</li> </ul>	보육교사
상황 파악 및 안전조치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장은 교사 보고 받은 즉시 신속히 상황 파악, 부모에게 연락한다.</li> <li>행위 영유아, 피해 영유아를 서로 다른 공간으로 분리 보호한다.</li> <li>모든 영유아의 안전 확인한다.</li> </ul>	<p>보육교사 원장</p>
외부 지원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한다.</li> <li>외부에 초기조사 및 자문 요청한다.</li> </ul>	원장
상황 파악 및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금까지 파악된 상황 및 사건 경위만 기록(원장 협조)한다.</li> <li>- 초기진술의 오염 방지를 위해 영유아에게 추궁, 반복, 추가질문하지 않는다.</li> </ul>	<p>보육교사 (원장)</p>
부모 면담 및 조치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 면담 통해 상황 설명, 전문기관 협조 요청 사항 전달한다.</li> <li>조사 기간 동원여부 협의(행위 영유아와 피해 영유아의 분리를 위해 행위 영유아 일시적 가정양육 권고 등)한다.</li> <li>피해 영유아 치료방안 논의한다.</li> </ul>	원장

외부 기관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 기관, 공무원이 초기조사 실시한다.</li> <li>- 가능한 영유아 스스로 말하도록 개방적 질문 사용하여 조사한다.</li> <li>- 초기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CCTV보관, 사진(발생 장소, 상처 등), 사건경위 기록, 부모면담 기록 등의 자료 확보한다.</li> <li>- 지자체 사례회의 개최 여부 판단 및 어린이집 자문 제공한다.</li> </ul>	원장
----------	--	----

환경점검 및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환경 및 보육일과 점검, 개선사항 살핀다.</li> <li>• 원장 지도하에 개별 행동지도 계획, 실행한다.</li> </ul>	보육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에 따라 교사 역할 지도 및 유아 성교육 실시한다.</li> <li>• 자문에 따라 부모설명회 및 부모대상 예방교육 실시한다.</li> </ul>	원장

- 유아 간 성 행동문제에서의 유아 보호와 갈등 해결을 위해 관련 성인들의 감수성 있는 태도와 모든 유아를 보호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 취학 전 기관의 교사, 부모 등 아동 주변의 성인들은 유아의 성적 행동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굉장히 상이하며, 매우 다양하게 반응한다. 부모는 행동이 상호적으로 나타났을 경우에도 대개는 다른 유아가 가해자이고 자신의 자녀는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이와 반대로 유아기관의 종사자나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를 성 학대 혹은 성폭력의 틀(child abuse frame) 보다는 커다란 행동문제(problem behaviors)의 범주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아동을 '교육'하고, 부모에게 '보고'하고,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 이런 간극이 자칫 관련 성인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관련 성인들 모두 사안에 대해 감수성 있는 태도를 보이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때, 또래의 성 행동문제에 의해 심신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를 피해유아로 부르되, 성 행동문제를 나타낸 유아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 유아 간 위험한 수준의 성 행동문제에 대한 대응의 주요 목표는 유아들의 안전과 건강한 발달 지원이며, 대응체계의 우선적인 목표는 유아들의 물리적, 심리적, 발달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위해적인 성 행동의 피해 유아, 행위 유아 모두에게 해당된다.
- 먼저 피해 유아의 경우, 연령에 적절치 않은 성적 경험이 유발할 수 있는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이해는 물론 심한 경우 성적인 위해로 인해 두려움이나 수치심 등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조기에 발견하여 재발을 막고 필요한 치료와 도움을 제공함으로서 피해 유아의 안전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위해적인 성행동을 한 행위 유아의 안전 역시 지켜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PART



# 아동 성폭력·실종 예방



아동 성폭력·실종 정의와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성폭력·실종 예방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I 아동 성폭력 예방

1. 아동 성폭력의 정의
2. 아동 성폭력 현황
3.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4. 아동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 II 아동 실종 예방

1. 실종에 대한 이해
2. 아동 실종·유괴 예방교육
3. 실종·유괴 예방수칙
4. 실종아동 발생 시 대처방법 및  
실종 예방 관련 정보



# I 아동 성폭력 예방

## 1. 아동 성폭력의 정의

### • 법률적 관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서 아동 성폭력의 개념을 '만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 임상심리학적 관점

- 발달단계가 앞선 사람이 발달단계가 늦은 사람에게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해 일어나는 성적행위를 의미한다.
- 생활연령(실제 나이)은 성인이지만 정신연령이 낮은 지적장애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법적인 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다.

### • WHO(세계보건기구)의 정의

- 아동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표현할 수도 없는 상황 또는 동의를 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활동에 아동이 노출된 것을 의미한다.

### • 성폭력의 예

- 성폭력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자신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강제로 하는 성적인 행위가 모두 해당됨. 특히 아동의 경우에는 저항하거나 충분히 싫다는 표현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행동은 모두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
- 몸의 중요한 부위들, 성기나 가슴 그리고 엉덩이나 배등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부위 등을 원하지 않는데 만지거나 부비거나 빠는 것
- 성기나 가슴과 같은 중요한 부위가 아닌 다른 신체부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이용당한 느낌을 받는 행동
- 원하지 않는데 자기의 신체 부위를 보여주거나 만져달라고 하는 것
- 행동으로 하지 않더라도 신체 부위나 성행위에 대한 말로 기분 나쁜 농담이나 놀리는 행동
- 애한 사진이나 음란물을 보여주는 것
- 강제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나 지적능력이 낮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보여주는 행동
- 아동이 스스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어른이나 나이 많은 청소년이 성적인 행동을 유도하거나 행동을 함께하는 것



## 2. 아동 성폭력 현황

### ● 피해자, 가해자 성별 · 연령별 상담 현황

- 성폭력 상담 전체건수 715건 중 669건(93.6%)이 여성 피해자로 나타났다.
- 이는 개소아래 현재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성폭력의 주된 피해자가 여성임을 보여준다.
- 전체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성인여성 피해자로, 총 506건(70.8%)으로 나타났다.
- 한편 남성 피해자의 비중은 8.1%(43건)로 2018년 6.1%, 2019년 6.8%에 이어 6%대를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 성별 · 연령별 상담 현황

단위: 건(%)

연령대 성별	고령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3 (0.4)	506 (70.8)	74 (10.3)	49 (6.9)	23 (3.2)	14 (2.0)	669 (93.6)
남	-	30 (4.2)	8 (1.1)	2 (0.3)	-	3 (0.4)	43 (8.1)
기타	-	1 (0.1)	-	-	-	-	1 (0.1)
미상	-	-	-	-	-	2 (0.3)	2 (0.3)
계	3 (0.5)	537 (75.1)	82 (11.4)	51 (7.1)	23 (3.2)	19 (2.7)	715 (100.0)

※ 출처: 2020년 상담 현황 및 전체통계 한국성폭력상담소

가해자 성별 · 연령별 상담 현황

단위: 건(%)

연령대 성별	고령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	28 (3.9)	-	2 (0.3)	-	1 (0.1)	31 (4.3)
남	15 (2.1)	552 (77.2)	49 (6.9)	15 (2.1)	2 (0.3)	33 (4.6)	666 (93.1)
기타	-	-	-	-	-	1 (0.1)	1 (0.1)
미상	-	3 (0.4)	-	-	-	14 (2.0)	17 (2.4)
계	15 (2.1)	583 (81.5)	49 (6.9)	17 (2.4)	2 (0.3)	49 (6.8)	715 (100.0)

※ 출처: 2020년 상담 현황 및 전체통계 한국성폭력상담소

### ● 영유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637(89.1%)으로 8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어린이(13세~8세)와 유아(7세 이하)인 경우 친족에 의한 피해가 각각 17건(33.3%), 11건(47.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 건(%)

유형 연령	아는 사람 637(89.1)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족 · 친족외 인척 102(14.3)		직장	친밀한 관계	인터넷	동네 사람	서비스 제공자	학교	유치원 /학원	주변 인의 지인					
	친족	친족외 인척													
고령 (65세 이상)	-	-	-	1 (33.3)	-	1 (33.3)	-	-	-	-	-	1 (33.3)	-	3 (100)	
성인 (20세 이상)	14 (2.6)	9 (1.7)	209 (38.9)	77 (14.3)	19 (3.5)	31 (5.8)	30 (5.6)	34 (6.3)	13 (2.4)	27 (5.0)	12 (2.2)	7 (1.3)	33 (6.1)	22 (4.1)	537 (100)
청소년 (19세~ 14세)	13 (15.9)	6 (7.3)	4 (4.9)	7 (8.7)	13 (15.9)	8 (9.8)	2 (2.4)	11 (13.4)	3 (3.7)	5 (6.1)	3 (3.7)	0 (3.7)	3 (3.7)	4 (4.9)	82 (100)
어린이 (13세~ 8세)	17 (33.3)	18 (35.3)	-	-	-	3 (5.9)	1 (2.0)	4 (7.8)	2 (3.9)	1 (2.0)	-	-	3 (5.9)	2 (3.9)	51 (100)
유아 (7세 이하)	11 (47.8)	9 (39.1)	-	-	-	-	-	-	-	2 (8.7)	-	-	-	1 (4.3)	23 (100)
미상	4 (21.1)	1 (5.3)	2 (10.5)	1 (5.3)	-	1 (5.3)	-	1 (5.3)	-	-	-	-	9 (47.4)	19 (100)	

※ 출처: 2020년 상담 현황 및 전체통계 한국성폭력상담소

### 3.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 ●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내용 및 방법

- 아동에게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접촉에도 기분 좋은 접촉과 기분 나쁜 접촉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나쁜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 등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부모나 선생님에게 알리게 한다.
  - 부모나 선생님은 언제나 아동편이며, 누군가로 부터의 비밀, 협박 등의 상황에서도 아동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 만약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져서 혼란을 느낀다면 교사나 부모에게 언제라도 이야기하라고 알려주고, 반대로 아동 스스로도 다른 친구의 신체부위를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알려준다.
- 그림이나 사진자료, 인형 등을 통해 신체구조와 차이,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 신체구조와 차이부분에서 신체의 정확한 명칭과 역할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 어른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때로는 자기주장을 하거나 거절할 수도 있음을 알려 준다.
- 가족이나 친지 또는 애는 사람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요구할 때에는 단호하게 거절하도록 한다.

#### ● 아동간 성폭력예방

- 발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런 행동이 아닌 보통의 아이들보다 과도하게 성적행동을 한다면 적절한 교육과 조치가 필요하다.
- 아이들의 문제행동, 과잉행동 등을 하였을 시 그 행동 원인을 살펴봐야한다.
  - 성행위에 노출됐을 가능성
  - 애착의 결핍 가능성
  - 인터넷문화 특히 만화, 영상(스마트폰) 등은 비정상적인 성행위에 쉽게 노출될 수도 있다.(모방범죄)
- 아동은 자신의 행동이 '성적괴롭힘'이라는 인식은 없을 수도 있으나, 나쁜 행동이라는 인식들은 대부분 갖고 있다.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 타인의 성적 영역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 동의개념/경계정의(사람과 사람사이에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음을 동의와 함께 설명)
  - 상대방이 싫으면 포옹도 해서는 안 되고,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중요 부위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 ● 그루밍(Grooming)성범죄

-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신뢰를 쌓은 후 행하는 성적인 가해행위를 통칭한다.
-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가해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것도 그루밍에 포함된다.
- '그루밍 성범죄'의 그루밍(grooming)은 '가꾸다', '치장하다'는 뜻을 지닌 영어단어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을 가꾸고 치장하는 것에 빗대었다.
- 이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대부분 아동이라는 점에서 해외에서는 'child(아동)grooming'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 그루밍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 피해자 고르기 → 피해자와 신뢰 쌓기 → 피해자의 욕구 충족시키기 → 피해자 고립시키기 →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을 유도하며 성적인 관계 형성하기 → 협박과 회유를 통한 통제 등 6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 ● 주의사항

- 아동이 다른 사람에 대해 지나치게 공포감을 갖지 않도록 유의한다.
- 과도하게 '성폭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강조하여 주의시키거나 관심을 끌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하는 것들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 아동의 말을 잘 들어 주고, 아동이 혼란스럽지 않게 설명해주며, 문제발생시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과 따뜻한 포옹 등도 중요하다.
- 아동의 특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지원한다.
- 어른들의 눈으로부터 아동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보육공간에서 문제발생 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한다.

#### 아동의 특징

- ① 아동은 힘이 없다.
- ② 아동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성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아동은 안전과 성교육에 관한 지식이 없을 때 이러한 취약성은 더 커질 수 있다.
- ③ 아동은 모든 성인을 믿는다.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은 8세 이하의 어린이는 친절하게 행동하는 모든 성인을 잘 믿는다. 심지어 근친강간이나 가정폭력으로 교도소에 있다 할지라도 아동은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유일한 보호자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 ④ 아동은 성인의 동기나 의도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아동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아동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강요하기 위해 강제, 속임수, 위협, 물질공세, 갈취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grooming이란 가해자가 아동과 친밀해지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동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해자의 친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가해자는 아동과 자주 마주치기, 아동이 좋아하는 물건주기 등 아동과 친밀해지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하며, 성폭력을 할 때 아동에게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는 행동이야"라고 말하기도 한다. Piaget의 도덕성 발달이론에 의하면 특히 7세 이하의 어린이는 다른 사람의 동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어떤 행동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동기나 의도가 아니라 외모나 태도 또는 나타난 행동의 결과로 선악을 판단한다고 한다.
- ⑤ 아동은 성폭력을 애정표현이나 애정의 증거로 오해하기도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은 성폭력적인 행동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보통으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가해자들은 아동들의 이러한 특성을 악용하여, 성폭력을 행한 뒤 "너를 예뻐해 준거야", "사랑해서~"라고 아이를 속이기도 한다.

## 4. 아동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 • 아동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 너무 놀라거나 당황스러움을 표현하지 않기

부모가 너무 과도하게 놀라움과 당황스러움, 한숨 쉬는 행동 등을 표현할 경우 아동은 자신이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잘못한 일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 애단치지 않기

“왜 조심하지 않았니?”, “왜 도망가지 않았어?”라는 말은 아동에 대한 질책이 될 수 있으며, 아동 자신 때문에 일어났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으므로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다독여 준다.

-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기

어른이 감정적으로 동요하거나 ‘나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졌다’고 느끼지 않도록 덤덤하게 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 아이의 행동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기

피해를 당한 아이가 어떠한 감정이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아이가 힘들었던 것에 대해 얘기할 때 잘 들어주고, 공감해 준다.

- 피해자의 입장에서 문제에 접근하기

피해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하며, 부모나 교사의 성인지나 가치관이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 너무 자세하게 캐묻지 않기

아동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나 말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 그냥 얼버무리거나 거짓으로 대답할 수도 있다. 아동의 혼란스러운 기분을 충분히 안정시킨 후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준다.

- 가능한 증거를 보존하기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정액이나 혈흔 등이 묻은 중요한 증거물을 없애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필요한 증거물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 • 성폭력 피해아동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

#### 성폭력 피해아동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

구분	소개	연락처 등
	폭력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종합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아동 중심의 종합 서비스와 전문가 그룹에 의한 후유증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 및 보호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돋는다.	<a href="http://www.child1375.or.kr">http://www.child1375.or.kr</a> 1899-3075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상담과 교육, 사후관리 등 각종 서비스 제공업무를 수행한다.	<a href="http://www.korea1391.go.kr">http://www.korea1391.go.kr</a> 아동지킴이콜: 112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1차적 긴급지원센터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상담이 필요한 여성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 신고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상담 및 피난처를 제공하며 전문 상담소, 각 지역의 정부기관, 경찰, 병원, 법률기관과 연계하여 피해 여성을 지원한다.	<a href="https://www.women1366.kr">https://www.women1366.kr</a> 전국 어디서나 1366/ 1년365일 24시간 HOT-LINE운영

### ◎ 기억해주세요! ◎

- ✓ 피해사실을 알게 된 후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 ✓ 아동에게 피해사실을 충분히 표현 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주세요.
- ✓ 피해사실에 대해 아동에게 반복해서 묻거나 확인하지 마세요.
- ✓ 아동이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면 못하게 막지 말고 잘 듣고 공감해주세요.
- ✓ 가해자, 피해공간 등 피해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자극을 피하세요.
- ✓ 사건 처리과정에 아동을 관련시키지 않도록 하세요.
- ✓ 아동에게 피해사실의 심각성을 부각시키지 말고 가능한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 II 아동 실종 예방

### 1. 실종에 대한 이해

- 실종아동의 정의 및 유형

- 실종아동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들을 말한다. 아동이란 실종당시 만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를 의미한다.

실종 아동의 유형

미아	유괴	가출	사고	유기
공공장소 등에서 아동이 길을 잃는 경우	금전, 성적 만족, 양육 등의 목적으로 강제로 데려가는 경우	아동 스스로 집을 나간 경우	사고로 인해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버린 경우

- 실종·유괴 예방교육 관련 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법)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2005년 제정 [관련 법령]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 검사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 실종아동법에 근거하여 전문 전문기관(실종 아동 및 장애인: 아동권리보장원, 치매환자: 중앙치매센터)에서 실종을 예방하고 가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 실종아동 현황

- 2021년 기준 실종아동 신고 접수 건은 21,379건, 미발견 79건으로이며, 미발견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되고 있다.

실종아동 신고접수 및 미발견 현황

(경찰청, 단위: 건)

구분	18세 미만 아동	
	접수*	미발견**
2017년	19,956	4
2018년	21,980	4
2019년	21,551	8
2020년	19,146	13
2021년	21,379	79

(\*접수: 당해연도, \*\*미발견: '21. 12. 31)

출처: e-나라지표 ([www.index.go.kr](http://www.index.go.kr)).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 실종으로 인한 문제

실종으로 인한 문제

대상	문제점 및 어려움
실종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단기적인 정신적, 심리적 충격에 노출될 수 있다.</li> <li>•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지장 초래한다.</li> </ul>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잘못으로 아이가 실종되었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며 이는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이어진다.</li> <li>•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활동으로 실직하거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며, 찾기 활동 비용 등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야기된다.</li> <li>• 실종아동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등으로 이혼 등 가족해체 유발한다.</li> <li>• 실종아동을 찾는 중 형제자매에 대한 애정과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한 연속적 문제 발생 할 수 있다.</li> </ul>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불안과 불신 분위기를 조성한다.</li> <li>•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사회적 비용과 실종가족의 해체 및 경제적 문제에 따른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발생한다.</li> </ul>

## 2. 아동 실종 · 유괴 예방교육

### ● 실종 · 유괴 예방교육 내용

- 실종 · 유괴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므로 생활 속의 다양한 상황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상황 판단력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청각자료 등을 통한 역할극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실종 · 유괴의 예방 · 방지교육’

실시주기(총시간)	교육내용	교육방법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을 잊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li> <li>• 미아 및 유괴 발생 시 대처방법</li> <li>• 유괴범에 대한 개념</li> <li>•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li> <li>•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li> <li>• 시청각 교육</li> <li>• 사례 분석</li> </ul>

### (1) 미아예방교육

- 미아상황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고 길을 잊고 당황하면 평소 기억하고 있는 것도 생각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아예방 3단계 구호를 반복해서 연습하도록 지도가 필요하며 안전요원, 아이와 함께 있는 성인, 경찰, 안전지킴이집 등에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미아예방 3단계 구호

멈추기!	생각하기!	도와주세요!
가족을 잊어버리면 그 자리에 멈추고 기다리기!	내 이름과 가족의 이름, 전화번호를 10번씩 생각하기!	기다려도 가족이 오지 않으면 주위에 안전한 사람에게 “도와주세요!”하고 도움 요청하기!

### (2) 유괴예방교육

영유아는 무서운 인상의 모습을 한 사람을 유괴범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유괴범은 오히려 친절하게 접근할 수 있고, 영유아와 만면이 있거나 부모와 잘 알고 있는 사람일 수 있으므로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부모(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아는 사람이어도 절대 따라가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유괴범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직접 재연하여 역할극을 통한 교육을 진행하며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면 분명하게 저항하도록 연습하여 저항하고 소리치는 것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상황을 분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유괴예방 3단계 구호

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가족의 허락 없이는 타인을 따라 가지 않는다는 의사표현하기!	가족 외의 타인을 따라 가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표현 하기!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할 경우 주위 사람들에게 나의 위험한 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라고 도움 요청하기!

아동 유괴 범죄의 유형과 특성

유형	특성 및 지도방법	대처방법
호기심유발형	아동이 좋아하는 것으로 호기심을 유발하여 유인한다. 예) 설문조사를 해주면 선물을 준다고 유인한다. 얼굴이 예쁘니 TV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하거나 연예인을 보여주겠다고 하여 유인한다.	따라가지 않고 “부모님께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해요.”라고 말해요.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는 아동의 심리를 이용하여 경계심이 풀어지는 때를 노리는 것으로 모르는 사람이 주는 물건은 절대 받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지인사칭형	부모님과 잘 아는 사이, 이웃으로 가장하여 친근하게 접근한다. 예) 가족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함께 이동할 것을 권유한다. 이름을 부르며 친분이 있음을 표현하며 유인한다.	따라가지 않고 “부모님께 먼저 여쭤볼게요.”라고 말해요.
	이름이나 얼굴을 알고 있어도 반드시 부모(보호자)에게 허락을 받도록 지도해야 한다.	
동정심유발형	도움을 요청하며 아동의 동정심에 호소한다. 예) 팔을 다쳤다고 도와달라고 유인한다. 걸어가면서 길을 가르쳐 달라고 유인한다.	따라가지 않고 “다른 어른에게 물어보세요.”라고 말해요.
	아동의 동정심을 이용하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보상심리를 이용하는 유인수법이다. 정상적인 어른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 직접 돋지 않는다고 해서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 아님을 알려주어야 한다.	
물리적 강제동원형	무조건 강제로 끌고 간다. 예) 싫다고 해도 억지로 끌고 가거나 차에 태운다.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하고 큰소리로 외쳐요. (소리를 지르거나 가지고 있는 물건 등을 던져서 주위사람들에게 알려요)
	아동의 공포심을 이용한 수법으로 되도록 밝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며 도움을 청하도록 지도한다.	

## 유괴를 당했을 경우 대처 방법

- 유괴범을 자극하거나 불안함을 조성하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 유괴범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아요.
  - 유괴범을 자극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요.
  - 마음을 진정시켜요.
  - 유괴범의 차량번호를 외워요.
  - 밥을 잘 먹고 건강을 지켜요.
  -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요.

## ⑤ 자녀에 관한 정보들을 기억해 주세요.

- 자녀의 키, 몸무게, 생년월일, 신체특징, 버릇 등 아동의 인적사항 적어놓는다.

## ⑥ 자녀의 하루 일과와 친한 친구들을 알아두세요.

- 아동의 하루 일과와 아동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누구와 있는지 알고 있다.

## ⑦ 정기적으로 자녀사진을 찍어두세요.

- 정기적으로 아동 사진을 찍어 보관한다. (사전등록한 경우 아동의 사진을 정기적으로 변경)

## 3. 실종·유괴 예방 수칙

## ● 부모(보호자)가 알아야 할 실종·유괴예방 수칙

## ① 사전등록을 신청해 두세요.

- 아동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사전 등록한다.
- 사전등록은 안전Dream 홈페이지(안전Dream 앱),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등록 가능하다.

##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아동이 실종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경찰시스템에 지문,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히 찾기 위한 제도

## ② 자녀를 집에 혼자 두지 마세요.

- 잠시 외출한다고 자녀를 집에 혼자 두고 나가지 않으며, 특히 아동이 잠든 틈에 외출하지 않는다.

※ 아이사랑 3대 실천 사항: 혼자 두지 마세요, 굶기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 ③ 항상 자녀와 함께 다니세요.

- 백화점, 마트, 시장, 쇼핑몰, 영화관, 공원 등 외출 시, 아동을 잠시라도 혼자두지 않는다.
- 화장실을 혼자 가게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거나 자동차 안에 혼자 두는 것도 위험하다.

## ④ 실종아동 예방용품을 활용하세요.

- 아동이 어리거나 장애로 말을 못하는 경우 실종아동 예방용품 착용한다.
- 아동의 이름과 연락처 등은 옷 안쪽이나 신발 밑창 등에 새겨놓는다.

장소, 상황별 실종·유괴 예방지침 <sup>2)</sup>	
놀이터, 공원에서의 실종·유괴 예방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가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약속한 시간을 지킨다.</li> <li>- 혼자서 놀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무리지어 논다.</li> <li>- 보호자가 항상 지켜볼 수 있는 밝고 환한 곳에서 논다.</li> <li>- 누군가 다가와 유인하는 경우에는 “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친다.</li> <li>-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li> </ul>
집에 혼자 있을 때의 실종·유괴 예방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li> <li>-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주의를 둘러보고 수상한 사람은 없는지 확인한 뒤 문을 연다.</li> <li>- 집안에 누가 있는 것처럼 “다녀왔습니다~”하고 큰소리로 인사하면서 들어간다.</li> <li>- 혼자 있을 때는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되도록 전화 받지 않는다.</li> </ul>
엘리베이터 안에서 실종· 유괴 예방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주위를 살펴보는 습관 기른다.</li> <li>-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숫자 버튼을 누르는 곳 앞에 벽을 등지고 선다.</li> <li>- 모르는 사람과 단둘이 탔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면 가장 가까운 층에서 내린다.</li> <li>-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바로 비상버튼을 눌러 도움 요청한다.</li> </ul>



2) 출처: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 아동실종예방수첩

## 4. 실종아동 발생 시 대처방법 및 실종 관련 정보

### • 실종 발생 시 대처방법

① 가까운 곳을 찾아보기

- 집근처에서 실종 시 갈만한 곳이나 자주 다니는 경로를 따라 살펴보고 공공장소에서 실종 시에는 안내데스크나 미아보호소에 안내 방송 요청한다.

② 즉시 신고하기

- 전화신고: 112 또는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182)
- 문자신고: #0182로 신고
- 방문신고: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 및 파출소

③ 주변관계망 통해 찾기

- 자주 이용하던 매장 등의 교류 통해 실종 발생 시 협조 요청한다.

### • 실종아동 발견 시 대처방법<sup>4)</sup>

- 아동의 불안한 마음상태를 이해하고 달래주는 것이 중요하다.
- 가장 먼저 112 또는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국번없이 182)로 신고한다.
- 아동이 있는 장소에 그대로 서서 일단은 아동의 부모를 기다린다. 아동이 잠깐 한눈을 팔거나 부모의 부주의로 떨어진 경우 아동의 부모는 가까운 장소에 있는 경우가 많다.
- 아동에게 이름과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물어보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달래준다. 아동이 집에 간다고 혼자서 가버리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 아동의 의복이나 신발, 소지품 등을 확인하여 이름이나 연락처 알아낸다.
- 백화점, 쇼핑센터의 경우 안내데스크나 방송실에 문의하여 실종아동 보호 안내방송을 요청해야 한다.
- 아동을 실종아동보호센터, 경찰서 등에 인계하는 경우 아동을 발견한 사람의 연락처 남겨 두어야 한다.

실종아동 발생 시 신고사항 <sup>3)</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이름</li> <li>• 아동의 나이(생년월일)</li> <li>• 실종된 일시와 장소</li> <li>• 실종 된 자세한 경위</li> <li>• 실종 발생 당시 아동이 입고 있던 옷차림과 신발, 소품, 신체특징 (얼굴모양, 머리모양, 흉터나 점 등의 여부, 안경 착용여부, 키, 몸무게 등)</li> <li>• 아동의 최근사진(가능한 다른 모습이 담긴 최근 사진 여려 장)</li> <li>• 부모 이름 및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주소</li> </ul>



### 실종아동 발견 시 대처방법

- ① 가까운 곳을 찾아보기
- ② 즉시 신고하기
- ③ 주변관계망 통해 찾기

3)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http://www.missingchild.or.kr))

4) 출처: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www.safe182.go.kr](http://www.safe182.go.kr))

### ● 실종 예방 관련 정보

#### 실종 관련제도

아동안전지킴이집	학교주변·통학로·공원 주변의 문구점, 편의점, 약국 등을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보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곳		
아동안전수호천사	신뢰성 있는 업체의 외근사원을 수호천사로 위촉하여 외근활동 중 아동보호활동을 하는 것. 현재 아쿠르트 아줌마, 집배원, 대권도 사범, 모범택시운전자회, 학원차량기사 등이 활동 중		
코드아담 (Code Adam)	<p>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 등의 실종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실종예방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치단계: 신고 접수 &gt; 경보 발령 &gt; 출입구 통제 등 감시 &gt; 실종자 수색 &gt; 미발견 시 경찰 신고 &gt; 발견 시 경보해제</li> <li>대상시설 1만㎡ 이상의 대규모 점포나 놀이공원,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5,000㎡ 이상의 버스터미널, 공항터미널, 도시철도역사나 철도역사, 관람석 5,000석 이상의 전문체육시설, 관람석 1,000석 이상의 공연장과 경마장 등</li> </ul>		
앰버경보	실종 아동이 발생하면 고속도로, 국도, 지하철 등의 전광판과 교통방송,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인상착의 등 신상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여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을 유도하는 체계		
실종경보문자	실종된 아동의 인상착의 등의 정보를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지역 주민에게 발송하여 적극적인 국민제보를 유도하여 아동을 신속하게 찾기 위한 제도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실종에 대비해 경찰 시스템에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실종 시 신속하게 찾기 위한 제도		

#### 관련 사이트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
<a href="http://www.safe182.go.kr/index.do">http://www.safe182.go.kr/index.do</a>	<a href="https://www.missingchild.or.kr/">https://www.missingchild.or.kr/</a>
	

#### 참고문헌 및 사이트

- 강현미(2022). 아동의 성행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인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서울특별시교육청(2020). 아동학대예방 학교용 가이드북.
- 교육부, 보건복지부(2016).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
- 교육부·보건복지부(2016).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
- 보건복지부(2016~2020). 2016 아동학대 주요 통계 -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 보건복지부(2020).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 빈번 발생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 설명서.
- 보건복지부(2021).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1). 202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 보건복지부·검찰청(2021).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1).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해동문제 관리·대응 매뉴얼.
-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0).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2014).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돋기 위한 체험교육 방안: 아동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 서울시·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5).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한 자기체크리스트.
- 성남시(2020). 지금 당신은 훈육을 하고 계십니까? 학대를 하고 계십니까?
- 여성부(2008).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재.
- 이완정·최지영·김소향·김정신(2020). 어린이집 아동 성 관련 일탈 행위 대응 방안. 보건복지부.
- 임영진, 고영건, 신희천, 조용래. (2012). 정신적 웰빙 척도(MHC-SF)의 한국어판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369~386.
- 장영인, 정민자(2016). 어린이집 학대예방지침과 매뉴얼의 기본원칙 논의. 한국영유아보육학, 100(), 25~55.
- 조명제·김계희(1993). 주요 우울증 환자 예비평가에서 CES-D10의 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32(3), 381~199.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올바른 훈육방법.

- 한국보육진흥원(2021).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0).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등을 위한 성인지교육 교재(3종).
- Dept. for Education of South Australian Government, CESA, & AISSA. (2019). Responding to problem sexual behavior in children and young people. Published by the Dept. for Education of South Australian Government, Catholic Education South Australia, and the Association of Independent Schools of South Australia.
- Dept. for Education, Catholic Education South Australia, Association of Independent Schools of South Australia. (2019). Responding to Problem Sexual Behaviour in Children and Young People: Guidelines for staff in education and care settings.
- Karageorge, K. & Kendall, R. (2008). The Role of Professional Child Care Providers in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Child Abuse and Neglect. U.S.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Minnesota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2017). Children with Sexual Behavior Problems: Research on best practices, current systems, and policy and practice recommendations to improve Minnesota's ability to provide early identification and intervention services.
- National Child Traumatic Stress Network(2009). Understanding and Coping with Sexual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Information for Parents and Caregivers.
- (사)한국성폭력상담소(2020).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http://www.child1375.or.kr/index.asp>
-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 아동실종예방수첩.
-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http://www.missingchild.or.kr)).
- 안전드림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www.safe182.go.kr](http://www.safe182.go.kr)).
- E나라지표 홈페이지 ([www.index.go.kr](http://www.index.go.kr)).

**기획 총괄** 김유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직무대행  
허다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집필 및 감수** 이완정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교수  
정인자 한국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협회  
김윤미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

2022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발행일** 2022년 3월  
**발행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주 소** 0430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345 주연빌딩 3층  
**전 화** (02) 701-0431  
**팩 스** (02) 6901-0221  
**디자인·인쇄** 디자인 나무 032-327-6109

---

본책자의 판권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본 출판물의 내용 일부 혹은 전부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